

碩士學位論文

『高麗史』에 나타난  
고려 여성의 사회적 지위

-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秦 榮 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10080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專攻

姜旻洵

2000年 7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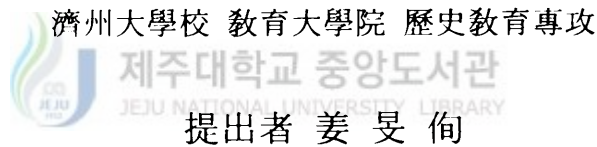
『高麗史』에 나타난  
고려 여성의 사회적 지위

-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秦 榮 一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7月 日



姜旻洵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0年 6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국문초록>

『高麗史』에 나타난 고려 여성의 사회적 지위  
-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

姜旻侁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專攻  
指導教授 秦榮一

본 연구는 고려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고찰하였다. 기존의 여성에 대한 연구가 정치사 중심의 근대여성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여성들의 생활사를 중심으로 하였고, 그 역사적 시기는 고려시대로 잡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高麗史』를 중심으로 여성관련 사료들을 분석하였다. 여성들의 혼인사례들을 분석하여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여성들이 혼인하기 전과 혼인 한 후에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위를 차지했는지, 그리고 호적사료를 분석하여 가족 내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지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장에서는 불교가 당시 고려사회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여성들의 신앙생활과 함께 불교의 세례 특징이 여성들의 상속에 어떠한 작용을 했는지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의 자유로운 교제가 가능했던 고려사회는 자유혼과 근친혼(近親婚)이 성행하였고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여성의 가족계승(家系繼承) 및 외손봉사(外孫奉祀)가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혼인제도에 있어서 여성들이 특별한 사유없이 기처(棄妻)당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지만 여성들의 재가에 있어 이는 어떠한 결점도 되지 않았다.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전 남편의 재산을 갖고 재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재가 후에 남편의 신분이 더 높아 신분상승의 경우가 가능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의 재가에 대해 국가에서는 재가금지라는 강력한 제재보다는 수절과 작(爵)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도덕적 차원의 권장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셋째, 고려시대 여성들은 혼인의 여부를 막론하고 재산상속에 참여할 수 있었고 재산처분권을 갖고 있었다. 넷째, 당시 호적과 호적기재 양식을 통해서도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 남녀차별보다는 남녀구분 없이 연장자 우선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고려불교는 당시 고려사회구조를 수평적 원리를 가능케 하여 여성들의 지위를 보장하였고, 여성들은 신앙생활을 통해 여론형성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고려말에 이르러 불교의 세속화와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고려 사회를 병들게 하였다. 결국 조선시대에 이르러 엄격한 가부장제와 주자가례에 의해 여성들의 생활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여성존중의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다.<sup>1)</sup>

\* 본 논문은 2000년 7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I. 서론 .....	1
II. 혼인사례를 통해 본 여성의 지위 .....	3
1. 근친혼의 성행 .....	5
2. 여성의 이혼과 재가 .....	9
III. 가족제도상 여성의 지위 .....	25
1. 재산상속과 여성의 재산권 소유 .....	26
2. 호적제도상의 여성의 지위 .....	38
IV. 불교와 여성 .....	44
1. 고려사회구조와 불교의 영향 .....	44
2. 신앙활동과 고려여성의 지위 .....	46
V. 요약 .....	54
참고문헌 .....	57
<ABSTRACT> .....	64

## 표 목 차

<표1> 고려시대 재가 .....	16
<표2> 조선시대 여성의 재가 .....	20
<표3> 고려시대 호적 분석 .....	39
<표4> 고려시대 왕실여성의 불사(佛事) .....	48



# I. 서론

고려시대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다. 고려는 고대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여 지방호족을 중심으로 중세문화를 성립시킴으로써 고대에서 중세로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는 고려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지닐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 시기의 사회적·문화적 특성들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고려 여성의 생활사를 중심으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필자가 특별히 여성들의 생활을 다루고자 하는 목적은 이제껏 각 시대별로 문화사 혹은 생활사를 다룬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여성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그 성과가 미약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사에 대한 연구가 20여년 전부터 유럽·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각 시대별 여성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 가족제도의 변화, 여성의 재산 상속권 및 특수직 여성<sup>1)</sup> 등의 생활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몇몇 여자대학을 중심으로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고 여성이라는 협소한 범위로 제한하여 여성학이 일반사와 동떨어진 특수학문 영역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또한 그간의 연구는 주로 정치사 중심의 역사서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과 사료상의 난점으로 인해 근대 여성연구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사라 해도 소수의 예외적인 여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

1) 특수직 여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金容淑, “宮中女性生活研究”, 「亞細亞女性研究」4, 숙명여대 아세아 여성문제 연구소, 1965.

김동욱, “이조 기녀사 서설”, 「亞細亞女性研究」5, 숙명여대 아세아 여성문제 연구소, 1966.

金聲均, “韓國女醫制度創設略考”, 「白山學報」3, 1967.

최숙경, “특수직, 여성”, 「韓國女性史」I, 梨大出版部, 1972.

하현강, “특수직 여성”, 「韓國女性史」I, 梨大出版部, 1972.

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 사회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혼인제도를 중심으로 그에 따른 삶이 모습을 다루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혼인제도<sup>2)</sup>는 사회가 지닌 특성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사회제도로 혼인을 매개로 하여 가족이 형성되고, 가족은 다시 사회를 구성하므로 고려여성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고려 시대 전 시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광대하여 다소 산만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지 모르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였음을 미리 밝혀두겠다. 첫째는 여성을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려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사회적인 존재라는 점,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대상을 여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나누는 오류는 범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둘째는 고려 혼인제도에 중심을 두어 혼인이 여성의 법제적·사회적 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고려 사회가 불교국가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불교의 영향이 생활 저변에 깔려 있었던 만큼 당시 불교는 고려사회 구조의 원리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는 곧 여성들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

---

2) 혼인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鄭範錫, “우리나라 同姓婚 및 近親婚에 關한 研究”, 「金斗憲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64.

李效在, “韓國結婚制度를 통하여 본 變動의 類型”, 「震檀學報」 31, 1967.

金用淑, “韓國女俗史”, 「韓國文化史大系」,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70.

高光林, “李朝時代에 있어서의 婚姻制度에 關한 研究”, 「인천교대논총」 2, 1971.

李兌榮, “韓國女性의 法的地位”, 「韓國女性史」 II, 梨大出版部, 1972.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研究 - 婚留婦家婚俗을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8.

張炳仁, “高麗時代 婚姻制에 대한 재검토 - 一夫多妻制設의 비판”, 「韓國史研究」 71, 1990.

다. 다시 한번 말해 고려시대 여성들은 사회와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 안에서 혼인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생활을 통해 사회 공동체 안의 존재였다. 이 당연한 전제 속에 제2장에서는 혼인사례를 통해서 본 고려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겠다. 근친혼의 금지조항을 통해 당시 성행했던 근친혼의 실태를 살펴보고 근친혼이 고려 여성의 지위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겠다. 제3장에서는 재산상속에 있어 고려 여성들이 누렸던 지위와 호적제도 상에서 여성의 지위를 혼인제도 및 친족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불교가 당시 사회구조에 끼친 영향과 함께 그것이 고려 여성들의 지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 장에서는 특히 유교가 성행했던 조선시대 여성과 구별되는 불교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겠다.

본 연구의 방법은 주로 사료를 통한 사례를 분석하여 각 제도사 영역별로 여성의 생활을 살펴봄으로써 고려전반을 통한 여성의 지위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겠다. 본 연구는 주로 『高麗史』를 중심으로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고려사의 편찬자들이 주로 조선왕조의 건국을 주동한 지배층임을 고려해볼 때 고려사에는 주로 유교적 윤리관에 부합되는 여성관이 제시되었고, 자신들의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는 여성의 활동은 평가절하되어 수록되거나 삭제될 수 있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 제시된 사료들은 지극히 일부분적인 것을 숙지하고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Ⅱ. 혼인사례를 통해 본 여성의 지위

고려시대의 혼인 요건을 살펴보면,

동성혼과 근친혼을 금한다(『高麗史』 卷84 志 38 刑法 1 奸非條).



종이 양민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을 때 주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장 100대를 치고 여자의 집주인은 도형 1년에 처하며 종이 자의로 장가들었으면 도형 1년 반에 처하고 양인이라 속였을 때는 2년에 처한다(奴娶良女主知情杖一百女家徒一年奴自娶一年半詐稱良人二年 ; 『高麗史』 卷85 志 38 刑法2 奴婢條).

조부모나 부모가 옥에 갇혔는데 시집 장가를 간 자는 도형 죄로 갇혔으면 곤장 100대를 치고 죽을 죄로 갇혔으면 도형 1년에 처하되 조부모나 부모의 지시가 있었을 때에 죄를 논하지 않는다. 첩을 얻은 경우에는 형을 세 등급 낮춘다(祖父母父母被囚而嫁娶者徒罪杖一百死罪徒一年祖父母父母命者勿論妾減三等 ; 『高麗史』 卷85 志 38 刑法 2 禁令條).



라 하여 동성혼과 근친혼을 금하고 있고 천민과 양민의 혼인을 금하고 있으며 조부모나 부모가 옥에 갇혔을 때는 혼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高麗圖經』에 보면,

고려의 서민들은 남녀의 혼취에 경솔하게 합하고 부부가 쉽게 헤어지니 전례의 법이 아니었다(男女婚娶輕合易離不法典禮 ; 『高麗圖經』 卷 19 民庶條).

라 하여 고려시대 남녀교제가 매우 자유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혼인 역시 자유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규정 가운데 가장 지켜지기 어려웠던 것이 근친간의 혼인이었다. 『高麗史』에 전하는 근친상간, 음란죄 중 아랫사람으로 위를 범하는 일, 남성이 처족(妻族)을, 여성이 부족(夫族)과의 사통(私通)이 눈에 많이 뜨이는데 이것은 남녀간의 내외법이 그리 엄하지 않았던 데 연유된 것은 물론이겠으나 삼국이래 근친혼에 익숙하여 자매가

한 남편을 섬기고 이모와 조카가 부부가 되는 등 족질의 혼동으로 동족의식이 희박해진 데도 한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 1. 근친혼의 성행

고려사회에서는 신라의 혼인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sup>3)</sup> 근친혼 및 동성혼이 성행하였다. 근친결혼은 왕실<sup>4)</sup>에서 뿐만 아니라 양반계층에서도 성행하였음은 근친결혼을 금지하는 국법의 내용 중에 「禁仕路」 「禁錮」 등 양반관료 계층에 해당하는 문구를 거의 공식처럼 찾아 볼 수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기록은 문종 조에 처음 나타난다. 즉,

문종십이년 오월 이 달에 대공친과 혼인하여 낳은 자식은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도록 결정하였다(文宗十二年五月 是月判 嫁大功親所產 禁仕路 ; 『高麗史』 卷75 志 29 選舉 3 限職條).

라 한 바와 같이 대공친이라 함은 당자매(堂姊妹)와 이모(姨)를 포함하는 것으로 문종 때의 근친금혼의 범위는 4촌까지였다. 당시 이 금령을 어겨 처벌한

---

3) 『東史綱目』 卷7 上 德宗條의 기록에서 고려의 혼인풍속이 신라 풍을 계승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고려왕실의 혼인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河炫岡, “高麗前期의 王室婚姻에 對하여”, 『梨花史苑』 7, 梨花女子大學校, 1968.

尹庚子, “高麗王室의 婚姻形態”, 『淑大史論』 3, 1968.

鄭容淑, “고려초기 혼인정책의 추이와 왕실족내혼의 성립”, 『한국학보』 37, 일지사, 1984.

-----, “公主의 婚姻關係를 통해 본 高麗王室婚의 一斷面”, 『高麗史의 諸問題』, 삼영사, 1985.

-----, 『高麗王室族內婚研究』, 새문사, 1988.

-----, 『高麗時代의 后妃』, 閔音社, 1992.

예가 전한다.

진사로 준은 그 아버지가 대공친을 취하여 출생한 사람인데 최석이 이부상서가 되어 청하기를 올에 의하여 금고에 처하고 서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인재등용에 있어 마땅히 상민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제진사와 더불어 관질을 주어 조적에 통하라 하매 정 등이 말하기를 집을 다스린 연후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인데 준의 아버가 혼례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인륜을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유교를 숭상하여 선비의 등용이 급한데 마땅히 계직을 강수하고서 하여 이를 왕이 따랐다(進士魯準 其父娶大功親而生者 崔爽爲吏部尙書 請依律禁錮不敘 王曰 選用人才 當不拘常民 可與諸進士並授官秩 以通朝籍 正等曰 家齊然後國治 準父不正婚禮 瀆亂人倫 然方今崇尚儒術 用士是急 宜降授階職 從之 ; 『高麗史』 卷95 列傳 8 文正傳).



그 후 선종 때에 이르러서는,

선종 이년 사월 배다른 남매끼리 혼인하여 낳은 자식은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도록 결정하였다(宣宗二年四月判 同父異母姉妹犯嫁所產 仕路禁錮 ; 『高麗史』 卷75 志29 選舉 3 限職條).

라 하여 금혼의 범위를 2촌까지 적용하였다.

숙종 조에 이르러 근친혼 금지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숙종 원년 이월 소공친과 혼인하여 낳은 자식은 대공친의 예에 따라 벼슬길을 금하도록 결정하였다(肅宗元年二月判 嫁小功親所產 依大功親例 禁仕路 ; 『高麗史』 卷75 志 29 選舉 3 限職條).

소공친간의 결혼도 대공친간의 결혼과 같이 제한을 설정하여 근친혼 금지의 범위를 6촌까지 넓혔으며 동육월에는 근친혼 자체를 금지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항이 보인다.

숙종 원년 유월 공친끼리의 혼인을 금하였다(肅宗元年六月 禁功親婚嫁 ; 『高麗史』卷84 志38 刑法 1 奸非條).

그런데 그 후 숙종 6년에는 이에 역행하는 기록이 보인다.

숙종 육년 시월에 대공친이나 소공친과 혼인하여 낳은 자식은 모두 벼슬길에 오르도록 결정하였다(肅宗 六年十月判 嫁大小功親所產 並許通 ; 『高麗史』卷75 志 29 選舉 3 限職條).

이는 오랜 전통적 관념을 바꾸려는 강압정책 역효과를 나타내 일시 후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이것은 당시에 계속 근친혼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로서 이를 입증하려는 내용의 기록은 의종 원년 십이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공친이나 소공친내에서 다만 사촌 이상의 혼인을 금하고, 5-6촌의 친척과 혼인하는 것은 금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혼인하는 사람이 많아 드디어 풍속이 되었으니 갑자기 금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이전에 혼인하여 낳은 자식은 벼슬길에 오르도록 허락하고 지금부터는 일절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도록 결정하였다(毅宗元年十二月判 大小功親內 只禁四寸以上犯嫁 五六寸親黨 不曾禁嫁緣此 多相昏嫁 遂成風俗 未易卒禁 已前犯產人 許通仕路 今後一皆禁網 ; 『高麗史』卷75 志 29 選舉 3 限職條).

즉 근친혼이 하나의 풍속으로 되어 있어서 갑자기 금하기가 곤란하여 이전의 근친혼자의 소산은 사로(仕路)를 허락하되 이후로는 일체 금고(禁錮)케 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예종 이후에는 다시 금지정책을 강화하였고 그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갔다.

예종십일년 유월 대공친이나 소공친과 혼인한 사람은 벼슬길을 막아 쓰지 않도록 결정하였다(睿宗十一年六月判 大小功親犯嫁者禁錮 ; 『高麗史』 卷75 志 29 選舉 3 限職條).

(인종) 십이년 이월 대공친이나 소공친과 혼인하여 낳은 자식에게는 7품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였으나, 이때부터는 벼슬길을 일절 금하도록 결정하였다(十二年十二月判 嫁大小功親所產 曾限士品 今後仕路一禁 ; 『高麗史』 卷75 志 29 選舉 3 限職條).

의종 즉위년에 처음으로 당고종 자매, 당질녀, 형제의 딸과의 혼인을 금한다(毅宗即位 始禁堂姑從姊妹·堂姪女·兄孫女相婚 ; 『高麗史』 卷84 志 38 刑法 1 奸非條).

의종 즉위년의 금지조항은 일반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지조항으로 보인다. 이는 동성근친혼이 상류사회에서만 아니라 일반서민에게 있어서도 많이 행해졌음을 나타내는 사례로 동시에 일반서민에 대한 근친금혼의 범위가 상류사회보다 좁게 규정되어 있음을 나타낸다.<sup>5)</sup>

충렬왕 34년 윤11월에는 다시 헌사(憲詞)의 청에 의하여 외가4촌의 통혼을

5) 李光奎, 「韓國家族의 史的研究」, 一志社, 1990. p.64에서 근친금혼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고려시대의 법문에 있어 시대가 下代로 내려갈수록 금혼의 범위가 확대되어 갔는데, 일반민에게 있어서는 同姓·異姓을 막론하고 6촌의 범위였고 상층사회에 있어서는 大小功親 즉 8촌의 범위였다.”

금지하고, 충선왕 즉위년에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역사상 최초로 동성혼을 금지하였다.

이제부터 만약 종친으로 동성한데 장가드는 사람은 황제의 명령을 어긴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대대로 재상의 딸과 혼인하여 아내로 삼을 것이며, 재상의 아들은 왕족의 딸과 혼인하는 것이 옳다. …문무양반의 집에서는 동성과 혼인하지 못하며 외가사촌은 또한 구혼을 허락한다(忠宣 卽位年十一月辛未 王下教曰…自今若宗親娶同姓者 以違背聖旨論 宜娶累世辛相之男 可聽娶宗世之女 若家世卑微不在此限…文武兩班之嫁 不得娶同姓 ; 『高麗史』卷33 世家 33 忠宣一).

공민왕 십육년에는 감찰사의 청에 의하여 처사후처(妻事後妻)의 자매를 계취(繼娶)하는 것과 이성 재종자매를 취하는 것을 금하였다.<sup>7)</sup>

근친혼 및 동성혼의 성행은 서(婿)와 처가 외가와 외손의 관계를 한층 친밀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근친혼의 경우 이성, 동성에 상관없이 여서(女婿)는 결국 족친이며 가족인 것이다. 그리하여 서는 친자와 같은 존재로서 처가의 제반사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 여성의 가족 계승 또는 외손봉사를 가능케 한 것이다.

## 2. 여성의 이혼과 재가

고려시대 이혼에 관한 조항은 『高麗史』 형법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고려시대 사료들을 보면 이혼에 대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처(棄妻)에 대한 사료가 많은데 기처란 처를 버리는 것으로서 처가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한다.<sup>8)</sup> 기처란 용

6) 『高麗史』卷84 志 38 刑法 1 奸非條. “憲司請禁外家四寸通婚”

7) 『高麗史』卷84 志 38 刑法 1 奸非條.

어에서 고려시대 이혼이 남성위주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사료가 있다.

아내가 함부로 남편을 떠나 갈 경우 도(徒) 2년에 처하고 개가하였을 경우에는 유형 2천리에 처하고 첩이 마음대로 떠나면 도형 1년 반이며, 개가하면 2년 반에 처하며 그 여자를 취한 자도 그 여자와 같은 죄로 처벌하였다. 다만 본 남편이 있는 줄 모르고 취한 사람은 죄에 걸리지 않는다(妻擅去 徒二年 改嫁 流二千里 妾擅去 徒一年半 改嫁 二年半 娶者同罪 不知有夫 不坐 ; 『高麗史』 卷84 志 38 刑法 1 戶婚條).

부모와 의논함이 없이 까닭 없이 아내를 버린 자는 그 직을 정지시키고 부처(付處)시킨다(無父母和論 無故棄妻者 停職付處 ; 『高麗史』 卷84 志38 刑法 1 戶婚條).

위 두 사료는 여성은 무조건 자의로 이혼할 수 없으며 여성측이 권리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없는데 비하여 남성의 경우 부모와 의논하여 합의를 보고 또 이혼이유만 정당하게 내세우면 어느 때고 이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이혼 사유 즉 기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항이 전에 대경 최온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나 병이 있다하여 그를 버

---

8) 권순형, “고려시대 혼인제도에 대한 일 연구-이혼을 중심으로”, 『梨大史苑』 第28輯, 梨花女子大學校, pp. 162-163 ; 기처란 용어 이외에도 고려시대에는 이혼을 의미하는 용어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리(離)’와 ‘절(絶)’은 혼인관계를 끊는다는 일반적인 이혼의 의미였고, ‘점(點)’은 처를 내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기(棄)’도 처를 버린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점’은 칠거지악으로 처를 내치는 경우 ‘기’는 이유 없이 처를 버리는 경우에 쓰여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구별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

리고 다시 좌승선 조계순의 딸에게 장가들었다(沈前娶大卿崔曄氏 以有疾棄之 改娶左丞宣趙季珣女 ; 『高麗史』卷129 列傳 42 反逆 3 崔沈傳).

처가 병이 있다 하여 이혼하고 재혼한 기사로 병든 처를 버리고 재혼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관념에서는 도덕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사례이다. 이에 대해 권순형씨는 주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가거나 대를 이을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점에서 취해진 조치로 보았다.<sup>9)</sup>

양원준은 자는 용장이며 충주 사람이다. …아내가 시어머니를 잘 섬기지 않자 그를 내쫓았다(梁元俊 字用章 忠州人…妻事姑不謹 黜之 ; 『高麗史』卷99 列傳 12 梁元俊傳).

운제현 지불역에 사는 사람 차달의 3형제는 함께 늙은 어미를 봉양하였는데 차달은 그의 아내에게 시어머니를 모심이 근식하지 않다고 하여 곧 헤어져 버렸고, 두 동생도 장가들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하여 효성스럽게 봉양한다고 한다(雲梯縣祗弗驛民車達兄弟三人 同養老母 車達 謂其妻事姑不謹 卽以棄離 二弟亦不婚媾 同心孝養 ; 『高麗史』卷3 世家 3 成宗 庚寅).

이 두 기록은 시어머니를 잘 섬기지 못하는 처를 버린 사례이다. 고려에서 효는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성종이래 역대 왕들은 효자에 대한 표창을 계속하였는 바 시부모에 대한 불효는 기처사유의 하나가 되었다.<sup>10)</sup>

9) 권순형, “전계서”, p.171 ;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아들을 낳지 못해 기처당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다시 권씨는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은 충분히 기처사유가 되었으나 당시 축첩이 허용된 사회였기에 상대적으로 기처가 될 가능성이 적었을 뿐이라 했다.

10) 권두奎, “高麗時代의 家族形態와 戶의 九條”, 慶北大學校 박사학위논문,



운해의 처 권씨는 성품이 질투가 심하고 사나웠다. 광주에 있을 때 투기를 하여 운해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옷을 찢었으며 양궁을 꺾어버리고 칼을 빼어 말을 찌르고 개를 쳐서 죽였다. 또 운해도 쫓아가서 치려고 하여 운해가 달아나 면하였다. 곧 그를 버렸으나 의가 채 끊이지 않아 권씨가 영흥군 환(環)에게 시집갔으므로 문하부에서 헌사에게 통첩하여 국문하였다(雲海妻權氏 性妬悍 在廣州 妬傷雲海面 裂其衣折良弓 拔劍刺馬擊犬斃 又追雲海 欲擊之 雲海走免 卽去之 然猶未絕 嫁永興君環 門下府牒 鞫之 ; 『高麗史』 卷114 列傳 27 崔雲海傳).

위 기록은 질투가 심한 처를 버린 사례이다. 이렇게 볼 때 이혼 사유에는 칠거지악이 적용된 듯 하다.

의민의 처 최씨는 마음이 흉악하여 질투로 인하여 계집종을 때려죽였고 또 종과 사통하였으므로 의민이 종을 죽이고 처를 내쫓았다... 의민의 딸이 승선 이현필(李賢弼)의 처가 되었는데 음탕한 것이 그 어미와 마찬가지로 현필이 더럽게 여겨 같이 살지 않았다(義旼妻崔氏 兇悍 囚妬 格殺家婢 且與奴私 義旼殺奴逐妻... 義旼女 爲承宣李賢弼妻 ?縱與母同 賢弼醜之不與同居 ; 『高麗史』 卷128 列傳 41 叛逆 2 李義旼傳).

위의 사료는 간음하여 이혼한 사례이다.<sup>11)</sup>

- 
1995. p. 91 ; 제시된 사료는 기처를 통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측면이 아닌 부부간의 사이보다는 모자간의 사이가 우선되는 법제로 여성이 남성에게 완전히 종속된 형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11) 권순형, “고려시대 간비(刊非)연구”, 「여성학논집」 제11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1994. pp. 22-23 ; 권순형씨는 이 사료를 통해 오히려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것이 아니라 억압적 지위를 알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처를 버린 사례가 많이 보인다.

이때 중부가 정권을 잡자 유인은 스스로 고립되어 위태로운 것을 깨닫고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염려하여 그 처를 성으로 쫓아내고 중부의 딸을 처로 삼으로 하였다(時仲夫用事 有仁自知孤危 恐禍及己遂其妻于海島 求仲夫女爲妻 ; 『高麗史』卷128 列傳 41 叛逆 2 宋有仁傳).

도하의 자제들도 다투어 사치함을 일삼아 가난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아내들이 많았다(都下子弟 亦爭事豪侈 妻多以貧見棄 ; 『高麗史』卷129 列傳 42 崔怡傳).

전자는 정치적 이유로 기처한 사례이고, 후자는 부귀를 구하기 위해 처를 버린 예이다. 이는 신라사회의 폐쇄적이던 골품제도가 무너진 뒤 혼인이 흔히 문벌을 높이는 방편으로 쓰여졌던 것이 무신 난을 겪은 불안한 사회상태에서 더욱 조장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남편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기처가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가 변에게 말하기를 “공께서 저의 천함으로 말미암아 유림의 청환과 중요한 관직을 밟지 못하시니 감히 청하옵건대 저를 버리시고 다시 세족에게 장가드십시오.”라고 하였다. 변이 웃으며 말하기를 “자기의 벼슬길을 위하여 30년 동안의 조강지처를 버린다는 것은 내가 차마 행할 일이 못되고 하물며 자식이 있는데 어찌 그렇게 하겠소.”라고 하여 끝내 듣지 아니하였다(妻謂拊曰 公因我系賤 不踐儒林清要

---

한다. “여성의 간통은 기처의 사유가 되지만 남성의 간통은 처벌할 방법이 없어 부인들이 질투 끝에 남편을 살해하고 그 죄의 대가로 참형을 받았다. 즉 이를 통해 고려시대 여성의 억압적 지위를 알 수 있다.”

敢請棄我 更娶世族 拊笑曰 爲己之宦路 棄三十年糟糠之妻 吾不忍爲也 况有子乎 遂不聽；『高麗史』卷102 列傳 15 孫拊傳).

“...처를 바꾸어 부를 얻는 자가 많은데 네가 부자집으로 다시 장가를 가려한다면 어느 누가 아내주기를 원치 않겠느냐”고 하였다. 수평이 말하기를 “빈부는 천명인데 어찌 차마 20년동안 함께 산 조강지처를 버리고 부자집 딸을 아내로 구하겠느냐”라고 하였다(率多易妻求富 君若改娶富家誰不願授室 守平曰 貧富天也 何忍棄二十年糟糠之妻求富室耶；『高麗史』卷102 列傳 15 權守平傳).

위에 제시된 사료는 비록 기처는 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정치적·부귀를 위해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기처당하는게 당연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료들을 보면 칠거지악의 이혼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정치적 요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자의나 이자결의 난이 발생하던 시기와 무신란으로 정권이 바뀔 때 정치적 이유로 기처한 사례가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고 무신정권이 안정기에 들어선 고종 이후 및 원간섭기에는 부귀나 출세 등 남편의 편의에 의한 기처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면 이같이 기처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별다른 제약을 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첫째 고려의 혼인제도가 신분적·계급내혼적 성격을 띠는 정략적이었다는 점과 둘째 고려 사회가 처계나 모계와 재산상속이나 관직, 봉작의 대상의 측면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셋째, 재혼이 가능한 사회였다는 점이다. 즉 기처를 당했어도 재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이 고려 여성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결점이 될 수 없었고 모계적 특성을 가진 고려사회에서 여전히 가부장적인 요소가 우위를 차지하는 하겠지만 여성의 신분이 중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존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수절한 여성에게 포상을 했듯이 아내가 죽은 후 혼자 산 남편에게도 역시 포상한 사례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여성에게만 정절을 강

조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정절관념을 증시여긴 당시의 풍속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sup>12)</sup>

기처에 대한 관념과 정책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주자학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려말에 이르러서이다. 기처는 재혼에 대한 규제 및 수절 장려 정책과 함께 도덕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탄핵대상이 되었다.<sup>13)</sup> 고려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유없이 기처하면 관에서 조사하여 처벌하고 다시 합치게 하는 등<sup>14)</sup> 합부로 기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려시대 여성의 처지보다 나아졌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강력한 정절이데올로기에 매여 결과적으로는 자유로웠던 고려여성보다는 달리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재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부부가 이혼 또는 사별로 그 관계가 끊어진 후 다른 배우자와 다시 혼인관계를 맺는 것을 재혼이라 하는데 성별에 따라서 그 용어의 차이가 있어 남성이 재혼한 경우는 재취(再娶)라 하고 여성이 재혼한 경우를 재가(再嫁)라 한다.

그럼, 과연 고려시대의 재가<sup>15)</sup>는 어느 정도 행해졌는지 알아보자.

---

12) 金尙泰, “우리나라 婚姻 制度에 나타난 女性地位의 變遷史의 考察”, 「馬山看護保健專門大學 論文集」, 馬山看護保健專門大學, 第十輯, 1986. p. 46 ; 이것은 남편에 대하여도 여자가 남편에 대하듯이 부인에게 대하라는 그 당시 사회적인 남녀간의 지위의 일면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자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는 조선시대와는 달리 남녀간에 있어 쌍무적 의무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13) 『高麗史節要』 卷25 忠穆王 4年 4月.

14) 조선시대 이혼에 대해서는 張炳仁, “朝鮮初期의 離婚의 類型과 그 規制”, 「朝鮮初期 離婚制度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을 참조할 수 있다.

15) 정세화·최숙경·이배용·장필화·김영미·박진숙,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인물 유형 연구-고대에서 대한제국 시대까지”, 「여성학논집」 제5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88.

위 표를 보면 국가에서 문제시하였던 것은 황상의 처 원씨와 조석건의 처와 같이 남편의 상중에 중매도 없이 결혼하는 경우이다. 공양왕 대의 규정에 의하면 재가가 금지된 경우는 명부(命婦)의 대열에 든 사람에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남편이 있는 경우가 아닌 과부의 경우 상복을 벗게 되면 재가

<표1> 고려시대 재가

왕	사람	내 용	출 처
?	성종비 문덕왕후 유씨	홍덕원군에게 시집갔다가, 후에 성종과 결혼	열전 후비
의종	송유인의 처	宋商 서덕언의 처였다가 송유인과 재혼	열전
?	최이의 후처	과부된 후 최이와 결혼	반역, 최충헌
?	대경 이서의 처	딸을 데리고 서와 재혼	반역, 임연
?	임추곤의 처 채씨	우경과 재혼	반역, 우경
원종	혜공 김준제의 처	임신 중 충렬왕 세자시 뽀혀 들어가 딸을 낳음	폐행, 이영규
충렬왕	충렬왕 후궁 숙창 원비 김씨	최문에게 출가했다가 충렬왕에게 헌납됨	열전 후비
충선왕	충선왕 후궁 순비 허씨	평양공현에게 출가했다가 3남 4년 낳고 남편 죽은 후 충선왕과 결혼	열전 후비
충숙왕	충숙왕 후궁 수비 권씨	전신의 아들과 결혼, 왕의 말 빙자하여 이혼하고 왕과 재혼	열전 후비
?	환관 양안길의 누이	결혼 후 왕명으로 박유평과 재혼	열전 반역
충혜왕	노영서의 처 남씨	선비와 결혼했다가 충숙·충혜왕과 간통, 노영서와 재혼	세가, 충렬왕
?	황상의 처 원씨	남편 사후 1년만에 증매도 없이 상과 재혼 →유배	열전, 제신, 황상
?	밀직 조석견의 처	남편 상중 강윤충과 결혼	
공민왕	기세걸 처 방씨	기철 사후 김용이 최수자의 처 삼아줌, 용이 죽자 세걸이 원으로 데려감	반역, 기철
우왕	강을성의 처	남편 사후 지?의 첩이 됨	반역, 간신
?	판서 김세덕의 처 윤씨	과부된 후 서의와 재혼, 남편을 미워하여 며칠만에 쫓아냄	반역, 제신

문덕왕후 유씨는 광종의 딸이다. 처음에 홍덕원군에게 시집갔다가 후에 성종의 배필이 되었다(成宗文德王后劉氏 光宗之女 初適弘德院君 後配成宗; 『高麗史』卷88 列傳 1 后妃 1).

숙창원비 김씨는 위위윤으로 처사한 양감의 딸로 얼굴과 몸매가 아

가 거의 자유롭게 허용되었다고 보인다.

름다웠다. 일찍이 진사 최문에게 시집갔다가 젊어서 과부가 되었다. …충렬왕이 뜻을 위로하고 풀어주기 위하여 김씨를 맞아들였다. 뒤에 숙창원비에 봉하였다(淑昌院妃金氏 慰衛尹致仕良鑑之女 有姿色 嘗嫁進士崔文早寡……解忠烈意 以金氏納之後 封淑昌院妃 ; 『高麗史』 卷89 后妃 2).

순비 허씨는 공암현 사람으로 중찬 공의 딸이다. 일찍이 평양공 현에게 출가해서 3남4녀를 낳았다. 현이 죽자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맞아들였고 즉위한 뒤 순비에 책봉하였다(順妃許氏 孔嚴縣人中贊珙之女 嘗嫁平陽公眩生 三男四女 眩死 忠烈王 三十四年 忠宣納之及卽位冊爲順妃後淑妃 ; 『高麗史』 卷89 列傳 2 后妃 2).

수비 권씨는 복주 사람으로 좌상시 형의 딸이다. 처음에는 밀직상의 전신의 아들에게 시집갔다. 형이 전가를 불초하게 여겨 이혼시키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가 충숙왕 복위 4년에 내지를 청탁하여 이혼시키고 드디어 왕에게 바치니 수비로 책봉되었다(壽妃權氏 福州人 左常侍衡之女 初嫁密直商議全信子 衡以全家不肖欲離之 而未果 忠肅後四年托內旨絕婚 遂納于王冊爲壽妃 『高麗史』 卷89 列傳 2 后妃 2).

위의 사례는 왕실에 있어서의 재가의 실태이나 재가한다 하여도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초혼 못지않게 떳떳한 결혼을 하였음을 후부(後夫, 재혼한 남편)의 신분<sup>16)</sup>에서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의 재가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16) 許興植, 「高麗社會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81. p.303 ; 조선중기에 이르면서 여성의 재가 시 남편의 신분은 점차 초혼 때보다 떨어지게 되었고 여성의 신분은 첩이 되거나 천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다.

딸이 셋 있는데 장녀가 상식직장 최효령에게 시집갔다. 직장이 죽자 시상서형부시랑합문사 이세연에게 재가했다(女三人 長適尙食直長崔孝諒 直長卒 更嫁於試尙書刑部侍郎閣門事李世延 ; 許興植, 「韓國金石文全文-中世下」, 亞細亞文化社, 1984. p. 816 金永夫墓誌)

평장사(平章事) 김영부의 3녀 중 장녀가 혼인하여 그 남편이 죽음에 재가한 사례로 오히려 초혼보다 재가했을 시 남편의 관직이 높은 것으로 보아 여성의 재가는 문제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공은 어려서 고아가 되었다.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의부가 가난하여 다른 곳에서 학문을 할 수가 없었다. 장차 그 자식과 업을 같이하고자 하였으나 그 어머니가 불가하다고 하였다. ... 만약 너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지하에 있는 너의 선부를 다시 볼 수 있겠느냐. 이에 공은 드디어 용단하여 술성재에서 학문을 하여 선부의 옛 업을 따랐다(公幼孤 及志學 義父以家貧 不欲它方學 將與其子同業 其母執不可 ... 若不爾則 吾何面復見 先夫於地下 遂勇斷其志乃以公□學率性齋 盖從先夫舊業也 ; 許興植, 「韓國金石文全文-中世下」, 亞細亞文化社, 1984. p.912 李勝章墓誌) ※ □는 판독불가 문자임

이는 전 남편의 아들을 데리고 재혼한 사례이다.

판서 김세덕의 처 윤씨가 과부로 있는 지 몇 년 동안 행실이 나빴다. 그 어머니가 전(前) 홍주목사 서의에게 개가시켰으나 겨우 며칠만에 윤씨는 의를 미워하여 내쫓았으므로 헌사에서 탄핵하였다...두란이 변방에서 여러번 공을 세운 것을 고하여 윤씨를 아내 삼아주고 예의판서에 임명하였다(判書金世德妻尹氏 寡居數年 有穢行 其母以嫁前洪州牧使徐義纜數日 尹氏惡義 而出之憲司劾之...豆蘭屢立邊功 以尹氏妻之

拜禮儀判書；『高麗史』卷116 列傳 29 李豆蘭傳).

이 사료는 윤씨가 재가뿐만 아니라 삼가(三嫁)했음을 나타내는 사례로 여성의 재가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또 고(故) 밀직 조석건의 상중에 있던 처에게 장가들고 석건의 재산까지 차지하였습니다(又裴故密直趙石堅服喪妻 據有石堅家產；『高麗史』卷124 列傳 37 康允忠傳).

고려시대에는 위와 같이 여성이 재가 시에 전 남편의 재산까지 가지고 재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는 왕실이나 양반이나 양인을 막론하고 조선시대와는 달리 상당히 자유롭게 재가할 수 있었고 또한 재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가의 형태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계속되는데 다음의 표는 그 실상을 말해 준다.





<표2> 조선시대 여성의 재가<sup>17)</sup>

번호	왕	사람	내용	신분
1	태조	태조 후궁 류씨	결혼하여 불노라는 아들두고, 다시 태조의 첩이 되었다가 후궁 봉해짐	미상
2	정종	구성우의 처 류씨	김익달과 결혼, 버림받고 구성우와 결혼	양반
3	태종	고려 우왕비 왕씨	판통예문사 류은지와 결혼	양반
4		마천목의 처 김씨	은천군 조기와 결혼, 부 사후 홍인신과 결혼	양반
5		강거신의 처 목씨	부 사후 3년내에 김만수와 재혼(오라비의 중매)	양반
6		최재전의 모	품팔이꾼에게 개가	미상
7		오건의 처 표씨	과부되어 조견과 혼인, 늙은 것 보고 도망가 후에 조계생에게 재가	미상
8		손홍종의 딸 손씨	남편 김척에게 버림받았으나, 남편 장가가기 전 제용소감 문조의 구혼받아들임	미상
9		종실 이원계의 딸	남편 홍노에게 버림받고 변처후와 결혼	양반
10		세종	연성군 김정경의 처 왕씨	3번이나 결혼, 부 사후 1년도 못되어 연회 즐김
11	이직의 딸 이씨		과부, 태상왕의 후궁이 됨	미상
12	이운노의 딸 이씨		과부, 태상왕의 후궁이 됨	미상
13	前판관 왕순의 처 세음가이		개가	미상
14	이지의 처 김씨		조화와 결혼했다가 이지와 재혼	양반
15	우시직 김개의 모 왕씨		3번 결혼	양반
16	손책의 모		사천 이봉길과 결혼→양인 손홍발과 재혼	양인
17	조여평의 장모		개가	양반
18	황보원의 딸		규극경과 결혼했으나 음탕하여 쫓겨난 후 개가, 또 건달패와 간음	미상
19	황성판관 박속향 처 송씨		남편 죽자 수절하지 못할 줄 알고 시아비가 개가 권유	양반

17) 정세화 · 최숙경 · 이배용 · 장필화 · 김영미 · 박진숙, “전계서”, 1988.

20	세종	이희의 처 권씨	남편 사후 이순몽에게 개가	미상
21		최완의 첩	재가	미상
22		김한의 모	3번 결혼(자녀안에 오름)	양반
23		진지의 조모	친인에게 개가(손자 진지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함)	양반
24	단종	이명민의 딸 이의정	민신의 아들과 결혼, 남편 죽은 한혜의 아들과 정혼	미상
25		김자균의 처 변씨	윤장손·김자견·김자균과 결혼	미상
26	세조	녹금	방패 지삼대와 결혼, 버림받고 박승경과 재혼	미상
27		강복의 처	남편 강복에게 버림받고 재가	미상
28	예종	단양군사 남의의 처 이씨	청상으로 살다가 검지 규균에게 개가	양반
29	성종	박자수의 딸	11세에 김종안과 결혼, 남편 사후 환기곤·진승각과 결혼	미상
30		양인의 딸 영비	남편 죽은지 한달 만에 청풍군 원의 첩이 됨(이혼)	양인
31		박시행의 모	재가(법 시행 이전의 재가이므로 추론하지 않음)	미상
32		김맹인의 조모 화혜부인	3번 시집감(자녀안)	양반
33		문충명의 모	재가(입법전의 재가는 허통)	양반
34		내관 전극생의 처	남편 3년상 지킨 뒤 내관 김옥련과 결혼	양반
35	중종	군수 한홍윤의 모 박씨	손조서의 아들과 결혼, 2년 뒤 한명회의 강요로 한명회 조카와 결혼	양반
36		정유의 딸	서성부정의 아들과 결혼, 남편 죽자 아버지가 개가시킴	양반
37		옥지	사족부녀로서 가난을 이기지 못해 개가	양반
38	현종	신광만의 처 홍씨	남편 사후 김의결의 첩이 되어 아들 낳음	미상
39		홍주세의 누이	개가	양반
40	영조	김간의 조카	과부되어 개가(국가에서 조사하기 전에 집안에서 그를 죽임)	미상

이상의 표를 보면 조선 후기의 사례는 3건 뿐인데, 그 중 영조대의 김간의 조카는 과부가 된 후 개가하자 국가에서 조사하기도 전에 집안에서 그를 죽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18) 후기에 이르면 여성의 개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개가가 문제시 된 것은 조선 성종 8년 재가녀의

18) 『英祖實錄』 卷29 7年 1月 辛未.

자손은 부거(赴舉)할 수 없도록 하고<sup>19)</sup> 성종 16년 『경국대전』에 성문화된 이후였다. 이것은 여성의 재가를 직접 금지한 것이 아니라 양반 여성들이 재가하여 낳은 자식들의 경우 관직에 나갈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장려·사회의 변화와 함께 이 규정은 관직에 오르는 것과 관계 없는 양인·천민층에게까지 보급되어 수절의 풍속이 성립하게 되었으며, 개가하는 경우 가족에 의해 살해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남편을 협박하여 이혼한다는 증서를 억지로 쓰게 하고 재가한 사례도 있는데<sup>20)</sup> 이러한 여성들은 적용할 죄가 조문에 없다는 것으로 보아<sup>21)</sup> 법의 허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여성통제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널리 행해졌던 재가에 대한 국가의 노력은 재가금지

19) 『成宗實錄』卷56 8年 7月. “命禁婦女再嫁 其再嫁人子孫 勿許授官赴舉”.

『經國大典』吏典 京官職, “失行婦女及再嫁女之所生 勿敘東西班職 至曾孫方許以土各司…外用之”

『經國大典』禮典諸科 “再嫁失行婦女之子孫及庶孽子孫 勿許赴文科生員進士試”

20) 이혼강요 사례

왕	번호	사 랑	내 용	신분
세종	1	환자 한세보의 처 박씨	남편을 싫어하여 협박, 이혼한다는 문서 받음	양반
	2	김가물의 처	남편에게 이혼한다는 증서를 억지로 쓰게 하고 사사로이 이실의 아들과 삼	미상
세조	3	양녀 분경	이용수에게 시집가려고 남편 최희 뽕 박, 기별명문받아 결혼	양인
	4	고경지의 딸	남편 강복을 침뽕하여 기별당한 후 이준생과 결혼	미상
성종	5	양녀 강덕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시아버 최수장과 통간했다고 사칭	양인

자료 : 정세화 · 최숙경 · 이배용 · 장필화 · 김영미 · 박진숙, “전계서”, 1988.

21) 『世宗實錄』卷33 8年 9月 辛丑. “한세보의 처에 대해 죄는 조문에 없지만 사리가 응당하지 못하니 장80에 처하기를 사헌부가 아뢰고 있다.”

의 형태가 아니라 먼저 수절을 권장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목종 2년에 정해진 봉작규정을 보면,

문무 3품 이상의 처로 과부로 수절하여 사는 자는 작을 봉하였다  
(文武三品以上妻寡居守節者封爵；『高麗史』卷75 志 29 選舉 3 穆宗 2年 10月條).

라 하여 수절한 자에 대한 예우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비문 등에서 부인의 수절 사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sup>22)</sup> 이는 다만 정절의 미덕을 칭송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공양왕 원년 구월에 도당이 아뢰기를 “산기 이상의 부인으로서 명부가 된 사람은 재가하지 못하게 하고, 판사 이하 6품의 부인까지는 남편이 죽은 3년 안에는 재가를 허락하지 않으며 위반한 사람은 수절하지 못한 죄를 받게 하고, 산기 이상의 첩과 6품 이상의 처첩으로 스스로 수절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정문을 세워 그 아름다운 절개를 드러내 주고 후한 상을 주옵소서”라고 하였다(恭讓王元年九月都堂啓 散騎以上妻爲命婦者母使再嫁 判事以下至六品妻夫亡三年不許再嫁 違者坐以失節 散騎以上妾及六品以上妻妾自願守節者旌表門宮仍加賞賜；『高麗史』卷84 志 38 刑法 1 戶婚條).

여기서는 재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지만 역시 재가가 금지되고 있는 여성은 명부의 대열에 든 사람에 한정되어 있고, 판사 이하 6품의 부인까지는 남편이 죽은 후 3년 만에 재가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남편 사후 3년 이

22) 許興植, 「韓國金石文全文-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p.685. 崔湧配金氏墓誌 “夫人年至五十二 有錦衾之歡 孀居三十年 以清慎貞潔自守 嘗末世累溺其心 晨興嘗讀佛書 非有疾故 雖家人莫見惰容 其高節美”

내의 재가도 빈번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규정은 조선 초기 사대부의 경우 처가 죽은지 3년 안에 개취(改娶)를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것과<sup>23)</sup> 같은 조치로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재가 금지와는 성격이 다른 인륜적 규제라 하겠다.<sup>24)</sup> 포상 규정의 설치는 당시 수절이 드물고 재가가 성행했다는 증거로 도당의 건의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선포하는 정도의 의미였던 것 같다. 2년 뒤인 공양왕 3년 헌사에서 상언한 내용을 보면,

공양왕 3년 헌사에서 아뢰기를…이상의 명부는 남4편이 죽은 뒤 개가한 사람은 봉작을 삭제하고, 30세 이전에 과부로 수절하여 60세가 될 때까지 절개를 일지 않은 사람은 생사를 논하지 않고 정문을 세우고 면세하여 주십시오(恭讓王3年 獻司上言…已上命婦 未亡改嫁者 追奪封爵 三十歲前守節寡 至六十歲 不失節者 勿論有沒 旌門復戶 ;

『高麗史』卷75 志 29 選舉 3 銓注 封贈制).

이라 하여 “산기 이상의 첩과 6품 이상의 처로서 스스로 원하여 수절하는 자”라 했던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첩을 제외한 6품 이상의 처 중 30세 이전에 과부가 되어 60세까지 수절한 자에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더욱 강해졌다.

부부는 인륜의 기본이기 때문에 부인에게는 삼종(三從)의 의는 있어도 경적(更適)의 이는 없는 것이니 지금 사대부의 정치로서 지아버가 사망한자 또는 기거된 자들이 부모의 정을 저버리고 스스로 재가, 삼가 절계를 상실하고도 수치스러운 마음이 없는바, 이것은 풍속을 해하게 함이 이를 데 없다. 바라건대 대소 양반의 정치로서 적삼부자(適三夫者)는 고려의 법에 따라 자녀안에 기록하여 그 풍속을 바르게

23) 『經國大典』禮典 婚嫁條 ‘士大夫妻亡者 三年後改娶’

24) 張炳仁, “전계서”, 1993. p. 61

할 것이다(夫婦人倫之本故婦人有 三從之義無更適之理今士大夫正妻夫  
殘者見棄者或父母奪情或粧束自媒至二 三其夫失節無恥有累風俗乞大小  
兩班正妻適 三夫者依前朝之法錄于恣女案以正婦道其 ; 『太宗實錄』 11卷  
29牧 表 太宗 6년 6月 丁卯條).

위 사료에서 자녀안에 기록한다는 것은 그 소생자(所生子)가 관직에 나가는 것이 금지되는 의미이며, 여성의 재가를 간접적으로 제지하려는 것이 당시 사회 분위기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적삼부자(適 三夫子) 즉 삼가( 三嫁)만을 문제삼았지 여성의 재가는 문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고려시대 여성의 재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성의 재가가 많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재가 이전의 이혼 역시 당시 여성에게는 결점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고려 말에 이르러 수절을 장려하는 규정들이 보이는데 이 역시 재가를 금지코자 하는 강압책이 아닌 도덕적 차원의 규정이었음도 살펴보았다.



### Ⅲ. 가족제도상 여성의 지위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테두리이고 성장과 더불어 많은 사회적 관계를 갖게 되지만 가족을 벗어나서는 어떠한 관계도 성립되지 못한다. 이는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여기서는 가족이라는 틀에서 성장한 후 혼인을 하고 혼인과 더불어 생겨나는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sup>25)</sup> 여성이 토지를 비롯한 재산의 상속이 가능했음을 살펴보겠다. 또한 호적 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여성존중의 사회분위기와 가족 내에서 여성이 점

25) 혼인과 관련하여 고려 여성들이 재산을 갖고 이혼 또는 재가를 하고 있음은 제2장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예는 생략하겠다.

했던 지위를 살펴보겠다.

## 1. 재산상속과 여성의 재산권 소유

고려시대의 상속제도에 대한 연구는 가족제도나 친족제도,<sup>26)</sup> 또는 고려 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sup>27)</sup>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고 토지제도와 함께 고려의 토지상속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sup>28)</sup>

당시의 친족조직<sup>29)</sup>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고려의 상

---

26) 고려시대의 상속제도를 가족·친족제도와 관련시켜 언급한 논고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旗田巍, “土地の嫡長子相續と奴婢の女子均分相續”, 「東洋文化」 22, 1957. 이는 후에 수정·보완하여 「朝鮮中世史會社の研究」, 法政大出版局, 1972로 발표되었다.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 「韓國文化大系」 IV, 高人民族文化研究所, 1970.  
“高麗後期 家族의 類型과 構成”, 「韓國學報」 3, 1976.  
“韓國家族史에서의 서로 다른 두 원리에 대하여”, 「歷史學報」, 106輯, 1985.

李光奎, 「전계서」, 1977.

27) 金一美, “朝鮮前期의 男女均分相續制에 대하여”, 「梨花史苑」 8, 梨花女子大學校, 1969.

崔淑卿, “高麗時代의 女性”, 「韓國女性史」, 梨花出版部, 1972.

金銀坡, “相續形態를 中心으로 본 高麗時代의 女子의 地位”, 「全北史學」 2, 1978.

28) 姜咎哲, 「高麗土地制度史研究」, 高女出版部, 1980.

崔在錫, “高麗朝에 있어서 土地의 子女均分相續”, 「韓國史研究」 35, 1981.

“高麗朝의 相續制와 親族組織”, 「東方學志」 31, 1982.

29) 친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 구조에 집중되었는데 그 특징은 부계구조가 아닌 비부계적이며 양측적(兩側的)인 구조이며 미분화된 단계에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盧明鎬, “高麗社會의 兩側的 親族組織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신인철, 「한국의 사회구조」, 문덕사, 1992.

李京炯, “高麗時代의 系譜觀念과 親族”, 최재석 교수 정년기념 「韓國의 社會

속제도<sup>30)</sup>를 연구한 최재석(崔在錫)씨는 기전위(旗田巍)씨의 적장자 재산단독설<sup>31)</sup>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sup>32)</sup> 상속대상을 토지와 노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봉작상속, 음직상속, 공음전상속, 노비상속, 제사·가계상속, 토지상속 등으로 세분화시켰다.<sup>33)</sup> 고려의 가족구성 형태가 직계가족이 아닌 직계비속(直系卑屬)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적장자만의 단독상속설이 아닌 자녀균분상속이었다는 것이 최재석씨 주장의 핵심이다. 또한 최재석씨는 토지상속과 제사상속 등은 법제상에 있어서는 적장자주의 원리가 채택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당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제도상의 것에<sup>34)</sup> 불과할 뿐이지 실제로는 자

와 歷史」, 1991.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1983.

- 30) 權斗奎, “전계서”, 慶北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5. p.12 ; 반면 권두균은 고려의 상속제도가 친족구조 조직과 관련성이 깊으나, 가족이 하나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구조의 대표적인 형태라 주장한다.
- 31) 旗田巍씨는 그의 「조선 중세사의 연구」에서 재산 상속의 대상을 크게 토지와 노비로 구분하였다.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노비는(그밖의 가산을 포함하여) 자녀균분상속이었음에 반해 토지는 적장자(嫡長子)만의 단독상속이었다는 것이 기전위씨의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는 이광규(李光奎), 최숙경(崔淑卿), 김은파(金銀坡) 등의 연구에서도 같은 논조를 띠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32) 崔在錫, 「전계서」 一志社, 1983. p. p 272-285 ; 기전위가 말하는 일본에서의 적장자단독상속이 유지되려면 가장으로서의 지위, 신분, 제사, 가명(家名)도 적장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상속되어야 하고 또 가족유형은 직계가족이어야 한다. 그리고 상속단위로는 개인이 아닌 가(家)단위로서 강대한 가장권과 무시된 여성의 지위 그리고 은거제(隱居制)가 결부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상속제도와 관련있는 가족제도의 특성은 직계가족이 아니고 상속단위도 개인단위의 상속이다. 또한 가장권의 존재가 뚜렷하지 못하고 더욱이 여성이 무시되지 않았으며 장남의 우위도 뚜렷하지 않으며 고려에는 은거제(隱居制)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전위씨가 주장하는 적장자단독상속에 대한 존재는 인정할 근거가 희박하다.
- 33) 崔在錫, “전계서”, 1982. pp. 327-359
- 34) 당의 상속인 선정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嫡妻長子 ② 嫡出長孫 ③ 嫡妻長子同母弟 ④ 庶子 ⑤ 嫡出長孫同母弟 ⑥ 庶孫



녀 간에 균분상속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sup>35)</sup>

이러한 상반된 견해 속에서 필자는 고려의 재산상속이 적장자 단독 상속이냐 자녀균분상속이냐라는 이분법적인 구분보다는 당시 여성들이 실제로 재산을 소유한 사례와 상속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사회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토지의 상속은 그 토지에 미치는 일정한 권리를 상속한다는 뜻으로 특히 소유권에 대한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먼저 실제 토지소유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토지의 소유권 상속과 관련하여 주목이 가는 사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릇 부모전으로서 문계가 없는 경우 적장에게 우선 상속하라(凡父母田 無文契者 嫡長爲先 決給 ; 『高麗史』卷85 刑法 2 禁令條).

문계(文契)란 일종의 유언장으로 부모가 살아있을 때 그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토지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이것을 관에서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사료에서 제시된 ‘문계가 없는 경우 적장에게 우선 상속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적어도 문계에 부모가 적장자 우선의 상속을 적어놓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추측해낼 수 있다. 또한 당시 문계에는 적장자 우선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상속을 바라는 부모의 의사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예측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먼저 당시 토지 상속이 적장자 우선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사료를 살펴봄이 좋을 듯 하다.

어머니가 일찍이 재산을 나눔에 있어 별도로 노비 40구를 남겼다. 익희가 말하기를 “한 아들이 다섯 딸 사이에 끼어 있는데 어떻게 차마 분재(分財)를 더 받아서 여러 자식에 고르게 나누어주려는 어머니의

---

35) 崔在錫, “전계서”, 1970.

“전계서”, 1976.

사랑에 누를 끼치게 하겠습니까”하고 말하였다. 이에 어머니가 의롭게 여겨 이에 따랐다(母嘗分財 別遺臧獲四十口 辭曰 以一男居五女間 烏忍苟得其贏 以累鴈鳩之仁 母義而從之 ; 『高麗史』卷104 列傳 17 羅裕傳附 益禧傳).

이 사료는 부친이 사망한 후에 모친이 재산을 소유한 예로 어머니가 별도로 익희에게 노비를 남겼다는 의미는 토지는 균등하게 아들과 딸에게 상속하였음을 의미하고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부모의 뜻대로 자녀 중의 한 사람에게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은 재산 상속을 하였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나익희(羅益禧)가 어머니의 뜻을 거절하고 어머니가 이에 따랐다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당시 상속규정이 반드시 적장자 우선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재산 상속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어떤 특권의식을 갖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음의 사료는 신분제적 제약이 많았던 조선시대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고려시대 재산상속의 특징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충혜왕 후 4년 병 걸리니, 자녀를 불러 놓고 이르기를 “요즈음 형제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한 것은 다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라 하고 아들 찬에게 명하여 문계를 써서 가업을 균분하였다. 또 훈계하여 이르기를 “화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써 너의 자손을 가르치라”고 하였다(尹宣佐…忠惠後四年 得微疾 呼子女而前曰 今之兄弟多不相能者 由有爭也 命子燦書文契 均分家業 且戒之曰 和而無爭 以訓汝子孫 言畢整衣冠而卒 ; 『高麗史』卷109 列傳 22 尹宣佐傳).

이는 균분상속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재산을 임종 전에 균분한 사례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규정에 있어 당나라의 규정과도 대비될 수 있는 적서(嫡庶)의 차별이 심하지 않았던 고려상속제도의 특징을 그대

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 더욱 구체화 시켜주는 사례가 있다.

마땅히 나누어야 할 재물을 나눌 때에 공평하게 하지 않는 자는 2匹에 杖20이고, 3匹에 30 4匹에 40 5匹에 50 6匹에 杖60에 처한다. 그리고 7匹에 70 8匹에 80 10匹에 90 20匹에 100에 처한다. 30匹에는 徒1년을 40匹에 1년 반 50匹에 2년에 처한다(應分財物 不平者 二匹 杖二十 三匹 三十 四匹四十 五匹五十 六匹杖六十 七匹七十 八匹八十 十匹九十 二十匹一百 三十匹徒一年 四十匹一年半 五十匹二年 ; 『高麗史』 卷85 志 39 刑法志 2 禁令條).

즉 자녀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하지 않는 자에게 처벌을 한다는 내용으로 그 규정이 상세한 것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재산상속에 있어 오누이간의 소송사건으로 많이 알려진 사료이다.

죄 없이 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경상도 안찰부사가 되었는데 백성 중에 동생과 누이가 서로 소송하는 자가 있었다. 동생이 말하기를 “다같은 자식인데 어찌 누이만 홀로 부모의 재산을 차지하고 동생의 몫은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니, 누이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산(家産)을 모두 나에게 주셨고…문서가 갖추어져 있으니 어찌 어겨서야 되겠는가”라고 하여 소송은 몇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 동생과 누이는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 서로 마주보고 우니 변은 마침내 그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주었다 (非罪流海島 尋授慶尙道按察副使 人有弟與姊相訟者 弟曰 既爲同産 何姊獨得父母之財 弟無其分耶 姊曰 父臨絶 舉家産付我…文契具存 胡可違也 訟之積年…弟與姊 聞而感悟 相對而泣 拚遂中分家産與之 ; 『高麗史』 卷102 列傳 15 孫拚傳).

여기서 누이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한 것은 부모가 죽으면서 어린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여 누이에게 재산을 모두 남겨 동생을 돌보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러나 후에 동생이 자라 재산상속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누이는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소송에 맞섰고 후에 부모의 뜻을 알아 동생에게 재산을 나누어주었다. 비록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지만 재산의 전부를 여성에게 상속한 사례로 상속제도에 있어 여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재산소유에 대한 여성의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았음을 이 소송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高麗史節要』에 전한다.

가을 7월에 참지정사 이숙이 파면되었다. 숙의 아내 최씨가 그 동생 인규와 재산을 다투어 사이가 나뉘었는데, 숙의 아들 온경이 익명으로 고소장을 내어 인규를 무고로 죄를 얹어 밤에 어사대에 투서하려다가 순검에게 잡히어 부자가 다 죄를 받았다(仁宗戊申…秋七月 參知政事李璠 罷璠妻金氏 與其母弟仁揆 爭財不睦璠子溫卿 作匿名書 誣構仁揆罪 夜投御史臺 爲巡檢所執 父子皆坐 ; 『高麗史節要』卷 9 仁宗 恭孝大王 6年條).

이숙의 처 김씨가 그녀의 동생 인규와 재산을 다투어 사이가 나뉘었는데 숙의 아들 온경이 익명으로 고소장을 내어 인규를 무고로 죄를 얹어 밤에 어사대에 투서하려다 순검에 잡히어 이숙부자가 다 죄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여기서는 시집간 누이와 남동생이 재산을 다투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재산에는 노비뿐만 아니라 토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외에 여성을 위한 경제적 보호책으로 시행되고 있던 구분전과 한인전도 여성의 토지소유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현종 15년 5월에 결정하기를 아들이 없이 죽은 군인의 처에게는 구분전을 주기로 했다(顯宗十五年五月判 凡無子身沒軍人妻 給口分田 ;

『高麗史』卷78 志32 食貨 1 田制 田柴科).

문종 원년 2월에 왕명으로 결정하기를 6품이하 7품 이상 관리로 대를 줄 자손이 없는 자의 처에게는 구분전 8결을 주며 8품 이하 관원 및 전사한 군인으로서 대를 물려 줄 자손이 없는 자의 처에게는 모두 구분전 5결을 주며 5품 이상 호의 부처가 다 죽었으되 아들은 없고 출가하지 않은 딸이 있으면 그에게 구분전 8결을 주고 출가한 다음에 국가에 돌려 마치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文宗元年二月判六品以下 七品以上 無連立子孫者之妻 給口分田八結 八品以下 戰亡軍人 通給妻口分田五結 五品以上戶 夫妻皆死 無男而有未嫁女子者 給口分田八結 女子嫁後 還官 ; 『高麗史』卷78 志 32 食貨 1 田制田柴科).

이번에는 고려시대 여성이 토지를 소유한<sup>36)</sup>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36) 김수진은 상속제와 별도로 여성의 토지 소유 가능 사실을 여성 직조 수공업자들에서 찾았다. 전시과 체제 아래서 장인들에게 지급되었던 토지 지급액을 환산하여 추론했을 시 여성 직조 수공업자들이 받았을 것이라 생각된 양은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 여성 기술자 토지 지급액<전시과>

관 청	직 책	결 수	전시과 종류
상의국	수장지유	25결 이상	개정 전시과
잡직서	계장 지유승지동정	25결-20결	개정 전시과
	계장 행수교위	20결	무산계 전시과
	수장 행수교위	20결	무산계 전시과
액정국	금장 지유승지	25결	개정 전시과
	나장 행수교위	20결	무산계 전시과
	금장 행수대장	17결	무산계 전시과
	릉장 행수부장	17결	무산계 전시과

자료 : 金水珍, “고려시대 여성의 토지 소유 형태”, 「부산여대사학」 제12집, 부산여자대학 사학회, 1994. p.16

야성군 김보일의 첩 박씨와 보일의 적손 김자가 밭을 다투었다(野城君金寶一妾朴與實一適孫金孜爭田；『高麗史』 卷133 列傳 46 辛禰后 1).

본 처도 아닌 첩이 적손과 토지를 두고 싸웠다는 것은 본 처는 말할 것도 없이 첩의 신분으로써도 토지를 소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7)</sup>

인종조 … 그러나 외삼촌의 첩의 논과 집과 노비를 빼앗아 그들 모자가 헐벗고 굶주리다 죽게 하였다(仁宗朝……然奪其舅妾田 廬臧獲使其母子寒餓而死；『高麗史』 卷98 列傳 11 朴挺槩傳).

역시 여성이 토지뿐만 아니라 집과 노비<sup>38)</sup>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사실로 외삼촌의 첩의 재산을 빼앗아 그 모자를 아사케 한 것은 당시 사

37) 토지 외에 첩의 신분으로 여성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첩이 장려한 집을 세우기도 하고(『高麗史』 魏繼廷傳 “嬖妾萬春 起第壯麗”), 호화주택을 갖기를 원하였다는 (『高麗史』 王熙附傳 “妾有華屋 欲有之”) 기사에서 더욱 확실시 한다.

38) 許興植, 「전계서」, 1981. pp. 326-327 ; 여성의 노비 소유권은 노비 소전래(所傳來)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더욱 확실시된다. 일단 상속받은 노비에 대해 여성은 결혼에 의해 부가(夫家)에 귀속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후 호적에까지 명시함으로써 소유권의 존재를 뚜렷이 하였다. 이렇게 하여 처변전래(妻邊傳來)의 노비는 부의 생전에 소유권이 구분되어 부처(夫妻)가 모두 사망한 후 자식들에게 균분상속되어 모변전래(母邊傳來)의 노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여성의 노비 소유권은 여권의 비중이 컸던 고려시대에 철저히 구분되어 조선 초에도 계승되었지만 조선 중기에 이르러 동요를 보인다. 호적의 분석에 의하면 조선 중종기에 작성된 호적에 노비 소전래가 구분하여 기록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성리학적 가족윤리가 강조되어 수용됨으로써 자식없이 사별한 경우에도 여성의 재가가 금지됨으로 인해 노비의 소유권마저 여성에게는 실제상 박탈된 결과가 된 때문일 것이다.

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sup>39)</sup>

찬성사 김용에게 명하여 첨동 기전룡의 어머니에게 가서 위로하고 토지를 주도록 하였다(命贊成事金鏞 往慰僉同奇田龍母賜土田 ; 『高麗史』 卷40 世家 40 恭愍王 3 恭愍王 12年 春正月 癸卯).

여성에게 토지를 하사한 내용으로 고려시대에는 여성이 토지상속 뿐만 아니라 하사의 대상도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폐비 이씨는 자겸의 넷째 딸이다. … 자겸이 패망하자 역시 간관의 딸대로 폐하였으나 왕은 독약그릇을 엮은 공을 생각하여 전택(田宅)과 노비를 내리고 하사품을 매우 후하게 하였다(廢妃李氏 資謙年四女……資謙敗 亦以諫官言廢 王念覆碗之功 賜田宅奴婢 ; 『高麗史』 卷88 列傳 1 后妃 1 (仁宗)).

위 사료는 폐비 이씨에게 전택과 노비를 하사한 기록이다. 즉 왕비이건 폐비이건 또는 평민의 본처이건 첩이건 간에 여성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신우가 유온장씨에게 토지와 노비를 사한 사례<sup>40)</sup>와 충혜왕이 외호김씨의 토전과 노비의 문권을 찾게 한 사례<sup>41)</sup>를 통해 고려시대 여성이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증거가 되는 문권이 있었음을 알 수 있

39) 崔在錫, “高麗時代의 父母田의 子女均分相續再論”, 『韓國史研究』 44, 1984. ; 고려시대 여성이 상속받을 수 있는 토지는 부모전이였다. 위 사료를 분석해 보면 첩이 된 여성도 첩이 되기 전에 결혼하였다면 그때 부모로부터 토지와 노비를 상속받았을 것이고 첩이 된 후에는 남자로부터 그러한 재산을 양도받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40) 『高麗史』 卷133 列傳 46 辛禡 1 辛禡 3年 10月 乙丑 “禡與乳媪張氏書曰 予方幼弱 惟爾小心保護 以著勤勞 式至今休 曰篤不忘 賜田百結奴婢十口”

41) 『高麗史』 卷36 世家 36 忠惠王 2年 秋 7月. “庚申王以外姑金氏 老疾垂死 遣前大護軍金贊前將軍宋明理 索土田臧獲及其卷”

다.

이는 중국에서 행해지던 재산의 균분제가 여성을 제외한 아들만의 균분이었던 점에 반해 고려시대의 가산의 분할에는 여성도 엄연히 남성과 동등한 지위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여성이라고 해서 분급량이 감소되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자매들에게 재산을 나누지 않았을 때는 비난을 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그 예로 문종 때 사람 이지저가 그의 아버지가 죽자 재산을 제매(弟妹)에게 나누어주지 않아 몹시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고려사 열전에 전한다. 또한 주시해 불만한 것으로 출가한 여성이 친정의 재산을 다투어 동생을 모함하다 들켜 벌을 받을 정도로 여성들이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것과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재산상속에 대한 참여에 어떠한 제한이 없었다는 것이다.<sup>42)</sup>

일반 재산 상속에 있어서 딸로서의 여성은 혼인의 여부를 막론하고 가산의 분배에 여성이 독자적으로 참여하였으나 구분전 같은 특별한 경우에 행해지는 토지 상속이나 수유권(受有權)은 일단 출가함과 동시에 상실되었다.<sup>43)</sup> 또한 고려시대의 여성들은 아내로서 남편의 재산상속에도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남편 사후에 자기에게 돌아온 재산을 가지고 재혼한 여성이 있는데 이는 충혜왕의 폐신(嬖臣) 강운충(姜允忠)이 밀직(密直) 조석견(趙石堅)의 복상(服喪) 중인 처를 취하고 석견의 가산을 차지하였다는 기록으로 조석견의 처가 재산을 갖고 강운충에게 재혼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sup>44)</sup> 또 한 가지 증거로 남편 사후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왕중귀(王重貴) 처의 경우가 있다. 남편이 죽은 후 자기에게 장가들고자 한 지윤(池淵)을 거절하고 왕중귀의 처는 최영(崔營)에게 가서 “첩이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므로 윤이 차지하고자 하여 첩에게 폭행과 욕을 가한다”고 호소하고 있다.<sup>45)</sup>

그러나 여성이 남편의 재산상속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상속규정이

42) 『高麗史』 卷95 列傳 8 李子淵傳.

43) 『高麗史』 卷78 志 32 食貨 1 田制田柴科條.

44) 『高麗史』 卷124 列傳 37 康允忠傳.

45) 『高麗史節要』 卷30 神佑 2年條.



나타나지 않고 있어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분량을 상속받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음은 재산처분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고려시대에는 여성들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별도로 시주하는 사례들이 여럿 보인다. 황주에 있는 신복선사(神福禪寺)를 중흥할 때 남편 박씨는 오산의 좋은 땅 15결을 부인 김씨는 별도로 돈 5백 꾸러미를 시주하였다<sup>46)</sup>는 이야기는 부부간의 재산이 공동 소유가 아니었다는 의미와 시주를 통한 각각의 재산처분의 경우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성들이 독자적으로 토지를 시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매매할 수 있는 권한과 동일하다고 생각된다.<sup>47)</sup> 같은 의미이지만 역으로 자진 기진·증여의 권한이 있다는 것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때 산원동정(散員同正) 노극청이 집이 가난하여 가옥을 팔려고 하였으나 팔리지 않았다. (그가) 이 일 때문에 밖에 나갔는데 그의 아내가 덕수에게 백금 열두근을 받고 집을 팔았다(時散員同正盧克淸家貧將賣家未售凶事出外其妻受德秀白金十二斤賣之；『高麗史』卷99 列傳 12 玄德秀傳).

무인정권기의 무인 노극청은 가세가 기울어 가옥을 팔고자 하였으나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는데 자신이 출타 중일 때 부인이 집을 팔았다. 여기서 부인이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옥의 금액을 흥정하고 또 팔았다는 사실은 매매의 주체가 부인도 될 수 있었다는 말이 된다. 물론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남편이 출타 중이었다는 사실이다.<sup>48)</sup>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의 매매

46) 『稼亭集』卷3. 大元高麗國廣州神福禪寺重興記 “始于延甲寅 訖工于至治之末 …舊無常住 資朴君施良田 在州西村之烏山者一十五結 其夫人金氏 施寶楮五百貫 以充供具焉“

47) 姜晳哲, 「전계서」, 1980. p.186 ; 강진철은 이미 민전의 매매처분이 자유스러웠던 이상 증여 기타 처분이 자유스러웠다고 했다.

48) 여자의 매매권에 대한 인정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중국은 남편 부재 중(사망, 지방 근무 등)일 경우에만 부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에 대해 부부 모두가 간여하였다는 것이고 매매 체결 당사자는 여성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여성도 직접 토지를 팔 수 있고 또 매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재산으로 취급된 노비문제<sup>49)</sup>를 살펴보면서 다시 이야기 해보겠다.

(노비)는 남편이 아내에게 성문(成文)하여 주기로 한 것은 주기로 한 것에 따라 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주기로 한 것은 인신·손수(印信·手寸)만으로 믿기 어려우니, 반드시 증필의 적실한 것이 있는 연후에야 주는 것을 허락한다 (夫與妻成文許給者從許與繼妻爲夫許與者但以印信手寸取信難便必有證筆的實然後方許決給 ; 『太祖實錄』 卷12 太祖 6年 7月).

남편의 노비를 부인에게 주는 것은 쉽게 인정되나, 아내가 남편에게 노비를 주는 것은 확실한 증필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노비(재산)를 마음대로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위의 기록은 조선 초의 것이어서 고려말 경에는 부인의 재산을 자신 소유로 만들려는 남편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위의 사료는 국가에서 부인의 재산을 지켜 주려고 한 조치인 만큼 여성들이 재산을 소유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간에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토지나 노비를 양도했다는 것은 각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매매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상에서 고려 여성이 재산상속과 재산소유의 실례들을 살펴보았는데 다음

---

뿐 부인이 재산을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매매권은 없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남편 유무에 관계없이 부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다.

49) 朴龍雲, 「高麗時代史」上, 一志社, 1988, p.272 ; 고려시대 노비상속은 자녀 균분상속이었고 이렇게 획득된 노비의 소유권은 매우 중시되었다. 결혼하였을 경우에도 부변전래(父邊傳來)의 노비와 모변전래(母邊傳來)의 노비가 호적상으로 분명히 구분되었다는 것에서 이같은 점을 엿볼 수 있다.

의 사례들을 통해 좀더 보충해보겠다.

모든 전정의 상속은 그가 죽은 뒤에 맏아들이 없으면 맏손자, 맏손자가 없으면 친아우, 친아우가 없으면 서손이, 손자가 없으면 손녀가 각각 받게 하였다(諸田丁連立 無嫡子則嫡孫 無嫡孫則同母弟 無同母弟則庶孫 無男孫則女孫 ; 『高麗史』卷 84 刑法 戶婚條).

위의 사료는 고려가 신라시대 이후 여손상속의 풍속을 지키고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가계계승으로서의 신분상속<sup>50)</sup>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순위를 ① 적처장자(嫡妻長子) ② 적출장손(嫡出長孫) ③ 적처장자동모제(嫡妻長子同母弟) ④ 서손(庶孫) ⑤ 여손(女孫)의 순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출가하여 자식으로 하여금 외가를 계승하게 한 것으로 여손이 최하위에 있다하여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어디까지나 열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호적제도상의 여성의 지위

호적제도의 연구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할 수가 있다.<sup>51)</sup> 그러나 본 장에서는 호적제도가 한 호를 대상으로 작성이 이루어진 만큼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겠다. 다음은 고려시대의 몇몇 호적을 예시하여 당시의 가족구성형태를 고찰<sup>52)</sup>한 것이다.

50) 『高麗史節要』卷 64 靖宗 12年 2月條

“凡人民依律之立嗣以嫡 嫡子有故立嫡孫 無嫡孫立同母弟 無同母弟立庶孫 無男孫者亦許女孫”

51) 崔弘基, 「韓國戶籍制度史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52) <例1>, <例2>, <例3>은 崔在錫氏가 國寶 131號 高麗後期豪族文書를 분석한 논문 “高麗後期家族의 類型과 構成”, 「韓國學報」33, 1976.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한 것이다. <例4>, <例5>는 李佑成氏의 “高麗時代의 家族”에서

<표3> 고려시대 호적 분석

<p>&lt;例1&gt;</p> <p>戶 朴 彦 57歲            妻 栗 伊 58歲            男 朴 興順 30歲            一女 春月 26歲            二女 春毛 20歲</p>	<p>&lt;例2&gt;</p> <p>戶 金 豆介 30歲            戶妻 元伊            妻父 金 祐 46歲            妻母 召 史 65歲            一女 於乙火伊 3勢            一男 貯甫 1歲            兄 金之 39歲            次第 金斗 27歲            同妻 內隱加伊 18歲            次妹 召史 25歲            次第 哲龍 20歲</p>	<p>&lt;例3&gt;</p> <p>戶 朴松 61歲            戶妻 召史 58歲            一女 召史 37歲            夫 黃文 40歲            一男 朴成 30歲            妻 加叱仇五 ?            二男 仇叱達 29歲            妻 五日 24歲</p>
<p>&lt;例4&gt; 癸酉籍(1333年)</p> <p>戶主 樂浪郡夫人 崔氏            長男 允培 32歲            二男 允成 28歲            三男 允芳 24歲            四 惠根 19歲</p>	<p>&lt;例5&gt; 壬子籍(1368年)</p> <p>戶主 李氏            (夫人, 本貫 永川)            長男 珍 44歲            二男 止 38歲            三男 皐 35歲            四男 乙升 33歲            一女 召史 30歲            二女 召史 24歲</p>	

위의 표를 살펴보면, <例1>은 직계가족으로만 구성된 소가족임을 알 수 있다. <例2>는 그 구성이 다소 복잡하여 처부와 처모,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형, 결혼한 제와 미혼매제를 포함하고 있고, <例3>은 결혼한 두 아들 가족과 함께 여

인용한 李氏족보 소재인 고려개성호적 4건중 대가족이라고 보여지는 2건을 재인용한 것이다.

국보 131호의 고려 후기 호적은 보기 드문 원자료이다. 당시 호적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된 양반호적인 것에 반해, 이 국보호적은 양반은 물론 군인·향리·서인·노비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존재한 신분의 거의 모두 나타나 있다. 또한 그 내용이 다양할 뿐 아니라 고려말의 사회전반을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부피가 크다.

서(女婿)도 포함된 가족임을 알 수 있다. <例4>, <例5>는 직계비속으로만 구성된 단순한 가족이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경우 모두 장성한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호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시된 모든 호적의 공통점은 여성의 기재순서에 있어서 아들과 딸을 전혀 차별함이 없이 출생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으로 고려시대에 호적작성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보다는 연령의 구별 혹은 연령의 권위의식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sup>53)</sup> 이렇게 자와 여의 구별없이 다만 출생순서에 따라 기록하였고, 또한 여성도 장성한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될 수 있었다. 특히 고려시대 호주는 한 호(戶)의 통제권<sup>54)</sup>과 재산권<sup>55)</sup>과 제사권<sup>56)</sup>을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여성이 호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당하였음을 의미하고 더불어 한 가정의 호주는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갖고 있으므로 가족 외에서도 그 지위를 짐작할 수 있을 듯 하다. 그리고 <例1>, <例2>, <例3>에서 생략할 수 있을 여성을 착실히 기록한 것은 여성이 무시되지 않은 당시의 사회관념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53) 『高麗史』 卷84 志 38 刑法 1 大憲.

54) 李光奎, 「韓國家族의 構造分析」, 1975, p.131 ; 통제권(統制權)이란 가족 구성원을 지배하는 권리로 여기에는 명령권, 제지권(制止權), 징계권이 포함된다. 또한 가족이 생산과소비의 단위인 농업사회에서 가사노동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호주는 노동력의 획득이나 유지에 영향을 주는 가족원의 결혼, 분가 등에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통제권을 부여했음을 나타내는 사료로는 「고려사」 권 84, 지 38, 형법 1, 직제조를 참고할 수 있다.

權斗奎, “전계서”, pp. 79-82

55) 權斗奎, “전계서”, 1995. p. 82 ; 재산권(財産權)이란 호주의 사적 재산 능력으로 토지, 노비 기타 재물을 소유 관리 처분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법적으로 하나의 호의 대표는 호주로, 호내의 모든 재물은 호주의 소유였고, 노비는 반인반물(半人半物)적인 존재로 호주에게 종속되어 매매 되었다. 그러나 호주는 자식을 재산시 하는 절대권은 가지지 않았다.

56) 許興植, 「高麗佛敎史 研究」, 一潮閣, 1986. ; 제사권(祭祀權)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고려사회는 제례를 가정에서 가례로 지내지 않았고 불교식으로 사원에서 기재(忌齋)를 지냈으며 남녀의 구별없이 제사를 지냈다. 즉 호주에게 특별히 제사를 주관하는 단독의 제사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호주의 생존기간 동안 호주를 중심으로 제례가 행해졌다.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의문점을 가져보아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例2>에서 처부모(妻父母)를, <例3>에서는 여서(女婿)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재석씨는 양인 10가족 중 3가족이 처부, 처모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5가족이 여서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한다.<sup>57)</sup> 그리고 <例3>의 경우 결혼하여 장성한 아들이 둘씩이나 있는데도 출가한 딸의 부부를 가족에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호적에 기록된 자들이 모두 실제 동거가족이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또한 미혼으로 보기 어려운 나이의 미혼자가 많다는 것도 위 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例1>의 경우는 30세의 형과 26, 20세의 여성이 모두 배우자가 없으며, <例2>의 경우는 39세의 형과 25세의 누이의 배우자가 없고, <例4>의 경우 32, 28, 24세의 세 아들이 모두 배우자가 없다. <例5>의 44세의 장남, 38세의 차남, 35세의 장녀, 24세의 차녀를 모두 미혼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例5>의 경우는 작성연대로 보아 원의 지배하에 있을 때로 원에서의 공녀 요구로 인해 오히려 조혼이 성행하였을 때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例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아이의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고려시대의 호적기재의 목적, 대상, 시기 등 그 작성방법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高麗史』에 보면 호적작성의 목적을

가장이 누구(漏口)하거나 연령을 증감하여 과역을 모역케 한 자는 1구에 도(到) 1년에, 2구에는 도 1년반에, 5구에는 도 2년에, 7구에는 도 2년반에 9구에는 도 3년에 처한다. 만약 연령을 증감한 것이 과역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4구를 1구로 계산하여 죄가 도 1년반에 그친다(家長漏口及增減年壯 免課役者 一口徒一年 二口一年半 五口二年 七口二年半 九口三年 若增減 非免課役 四口爲一口 罪止徒一年半; 『高麗史』卷84 志 38刑法 1 戶婚條).

57) 崔在錫, “전계서”, 1976, pp. 33-34.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호적작성의 목적은 국가가 인정(人丁)의 많고 적음을 파악하여 부역을 정하려 함에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에게는 장정(壯丁)을 정확히 기록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가족을 누락하거나 나이를 증감하여 역을 면하려 했을 때는 처벌받게 되어 있었다.

양반의 호적 작성법에 대한 기록은 공양왕(恭讓王) 2년 7월에 보인다.

공양왕 2년 7월에 도당이 아뢰기를 옛 제도에 양반의 호구는 반드시 3년에 한번씩 적을 만들어 하나는 집에 보관하였는데, 각기 호적에는 호주의 세계(世系)와 동거하는 자녀, 형제, 조카, 사위의 족파에서부터 노비가 전하여진 종파와 출생, 노비의 이름과 나이, 노처와 비부의 양천에 이르기까지 모두 갖추어 기록하여서 참고하여 열람토록 하였더니 근래에는 호적법이 폐하여져 양반의 세계를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恭讓王二年七月 都堂啓 舊制兩班戶口 必於三年一成籍 一件納於官 一件藏於家 各於戶籍內 戶主世系及同居子息兄弟姪壻之族派 至於奴婢 所傳宗派 所生各歲 奴妻婢夫之良賤 一皆備錄 易以考閱 近年以來 戶籍法廢 不唯兩班世系之難尋 ; 『高麗史』卷79 志33 食貨 2 戶口條).

양반 호적의 작성이유는 일반백성과는 달리 호주의 세계(世系), 동거자식, 형제, 조카, 사위의 족파(族派) 및 노비에 관한 사항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기록을 가지고 호적에는 동거가족을 기록하며 양반호적은 매 3년마다 작성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서민의 호적작성 목적이 장정을 파악하여 역을 부여하는데 있다는 것은 호적작성을 길어도 3년 이내에 재작성해야 했을 것과 어린이나 여성은 소략 또는 제외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낼 수 있다. 소략할 수도 있는 여성을 착실히 기록했다는 것과 출가한 딸의 부부가 상당기간동안 여성의 집에 동거가족으로 포함했다는 것은<sup>58)</sup> 다시 한번 말하지만

58) 이는 고려시대에 행해진 率媾制나 媾留妻家の 결혼 풍속에 기인한 것이라

여성이 무시되지 않은 당시의 사회관념 때문이라 하겠다.

조부모나 부모가 있는데 자손이 호적과 재산을 달리하여 공양하기를 게을리 하면 도(徒)2년, 복상 중에 호적을 달리 하면 도1년이다(祖父母在 子孫別籍異財 供養有闕 徒二年 服內別籍 徒一年 ; 『高麗史』 卷84 志38 刑法 1 戶婚條).

위의 사료는 별적이재(別籍異財) 즉 분가에 대한 규정으로 고려시대에는 조부모,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 분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금지한 이유가 공양을 소홀히 할까 염려한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공양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분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59)</sup> 사실상 별적이재에 대한 규정의 제정 동기 중의 하나가 사회적인 동기로 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sup>60)</sup> 별적(別籍)에 대한 용어를 좀 더 살펴보면 별적이란 별호적(別戶籍)의 준말로 자손이 부모호적에서 다른 호적에 부적하는 경우와 완전히 분가하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호적에 부적하면 요역이 회피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었다.<sup>61)</sup> 두 번째로 별호

---

생각된다. 이 두 결혼풍속에 대해서는 본 고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李光奎, 「전계서」, 1977.

金銀坡, “高麗時代 法制上 및 社會 通念上에서의 女子의 地位”, 「全北史學」 3, 全北大學校史學會, 1979.

崔在錫, “韓國社會史研究와 社會脈絡的 視覺”, 「精神文化研究」, 통권 25, 1985.

朴惠仁, 「전계서」, 1988.

권순형, “고려시대 婿留婦家婚에 대한 연구”, 「梨大史學」, 30輯, 梨大史學會,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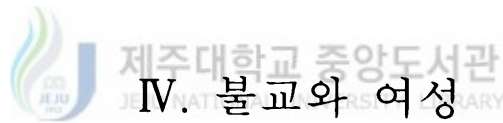
59) 金銀坡, “전계서”.

60) 權斗奎, “전계서”, 1995.

61) 『高麗史』 券79 志 33 食貨 2 戶口條. “仁宗 十二年 二月判 居京大小人員子弟 謀避役 各於本貫親 淑戶籍類村 以致各貫混淆 自今京人村外籍者 通禁”



적을 만들어서 부모 생존시 분가하여 독자적인 가계를 경영하는 경우이다. 분가의 대표적인 형태는 혼인이었으나 고려시대에는 혼인 이후 부가(父家) 또는 처가(妻家)에 동거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새로이 거주지를 정한 예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기혼남성의 경우 실제로는 처가와 동거하거나 또는 분가하여 생활하면서 형식상 규정에 제약을 받아 아버지측 호적에 동거가족으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그리고 『고려사』 권 109 열전 이곡전(李穀傳)에서 남자를 따로 살게 할지언정 여자는 내보내지 않으며 부모를 봉양함은 여성의 임무라는 말<sup>62)</sup>로 미루어 보아 당시에 여성이 가지는 가정에서의 지위는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성의 분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었고 딸의 사위의 가족과 동거하고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 없는 일반화되어 있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 IV. 불교와 여성

### 1. 고려사회구조와 불교의 영향

삼국시대 전래된 이후 줄곧 위로 왕족 귀족부터 아래 천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그리고 깊게 스며든 불교신앙은 고려에 들어와 이제 외래종교가 아닌 보편화된 신앙이다. 국가적으로 여러 종목의 대대적인 불교행사가 행하여졌고, 역대

62) 원나라가 여러 차례 고려에 동녀(童女)를 요구하자 곡(穀)은 어사대에 말하여 그것을 혁파할 것을 요청하고 상소문을 대신 짓기를...고려의 풍속은 차라리 아들과 딸과 살게 할지언정 딸은 내보내지 않는 것이 진나라의 데릴사위와 같아 대개 부모를 봉양하는 일은 딸이 맡아합니다(元屢求童女于本國穀言於御史臺 請罷之 代作疏曰...抑彼風俗 寧使男異居 女則不出 若爲秦之贅壻然 凡致養于父母者 有女之尸焉; 『高麗史』 卷109 列傳 22 李穀傳).

임금이 승불정책은 불교 사원의 경제적인 팽대와 불교승려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놓게 되었다. 승려들의 사회적 지위는 불교의 숭상 및 광종 대 일반과거제도와 함께 승과를 통한 승려의 출세의 길이 열림으로써 더욱 높아졌고 후에 사원경제가 팽대되어 그들의 귀족화, 세속화로 출가하여 승려가 됨도 남자의 출세의 한 방편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왕자를 비롯하여 귀족의 자제 중 출가하여 승려가 된 사람이 많았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고려시대의 불교는 모든 계층에게 출생으로부터 사후의 제례에 이르기까지 생의 단계마다 깊은 영향을 주었다.<sup>63)</sup> 또한 불교적 환생사상은<sup>64)</sup> 고려시대의 친족의식에 작용하여 가문이나 상속도 부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닌 부계(父系)·처계(妻系)·모계(母系)의 3계통의 친족이 강하게 작용하는 수평적 사회원리를 작용케 했다.<sup>65)</sup>

친족조직에 있어서 수평적 원리가 작용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는 엄격한 가부장적인 사회가 아니라 여성도 남성과 비슷한 특혜들을 갖고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sup>66)</sup>

다음으로 고려시대 불교의 특징은 불교를 매개로 하거나 불교의식과 결부된 민중제전을 계기로 이루어진 모임이 많았다는 것이다.<sup>67)</sup> 연등회나 팔관회 등은 폐쇄성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사회에 활력소를 불어넣었다. 또한 불교제전을 계기로 이성(異性)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sup>68)</sup> 이성과의 사교는 통혼에 이르

63) 許興植, 「전계서」, 1986. p. 19

64) 許興植, 「전계서」, 1986. pp.19-20 ; 불교의 윤회적 환생설은 고려인의 시간관이나 세계관과 밀착되어 시간에 대한 공포와 입후(立後)에 대한 염려를 해소시킴으로써, 일부일처제를 유지시키고 입양제가 존재할 수 없었다. 이는 자식이 없다해서 취첩(娶妾)하거나 기처의 이유가 되고 있었던 조선사회보다 여성의 지위를 우월하게 만들었다.

65) 許興植, 「전계서」, 1981.

66) 본 고 제2장을 참조바람.

67) 「高麗史」 세가에 기록된 불교행사만도 그 종류가 80여 종이 되며 개설된 총 횟수는 1,000회가 넘는다. (徐閏吉, “佛教의 護國法會와 그 道場”, 「佛敎學報」 14, 1977. p.91; 金炯佑, “高麗前期 國家的 佛敎行事的 展開樣相”, 「伽山李智冠스님 華甲紀念論業 韓國佛敎思想史」 上, 1992. p.871)

기까지 이들의 신성감을 고조시켰다. 제전에는 신분별, 연령별, 성별로 분리된 모임이 형성됨으로써 수평적 사회구조의 원리가 강화되었다. 청소년층에는 신라 시대의 풍속을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국선(國仙)이 있었고<sup>69)</sup>, 지방에는 향도(香徒)라는 집단이 있었다. 개경의 여성들은 노소존비(老少尊卑)를 막론하고 향도<sup>70)</sup>를 맺고 불교식 재와 연등에 관여하였다.<sup>71)</sup> 이와 같이 불교는 당시의 수평적 사회를 강화시켰고, 가부장적 부계친족 윤리를 강조한 유학보다 훨씬 여성들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간접적인 기반이 되었다.

## 2. 신앙활동과 고려여성의 지위

이상에서 우리는 불교가 고려사회에 수평적 원리를 작용케 하여 여성들의 지위를 보장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교의 영향과 결부된 여성들의 생활을 『高麗史』 형법지의 금령들을 제시하며 살펴보겠다.

현종 원년, 중과 여승이 술빚어 먹는 것을 금하였다(又禁僧尼釀酒).

현종 8년 정월, 사람들이 집을 시주하여 절로 만들고 부녀자들이 비구니가 되는 것을 금하였다(禁人捨家爲寺 婦女爲尼.)

현종 19년 2월, 왕명으로 중과 여승이 어리석은 백성을 속여 재물을

68) 許興植, 「전계서」, 1986. p.21 ; 종교는 윤리상 남녀의 정절을 강조하지만 때로는 종교의식이나 축제의 뒷골목에서 남녀의 정절이 오히려 문란해지는 계기도 된다. 고려의 불교가 후기에는 난잡한 행사가 심하여 성리학자들의 경건주의와 대비되는 느낌마저 있다.

69) 『高麗史』 卷108 列傳 21 閔宗儒 附頤.

70) 향도란 재가신도(在家信徒)로서 집단적인 불교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계층별·성별·연령별 조직체계로서 수평적 사회를 사상과 응결시킨 집단이었다.

71) 『高麗史』 卷85 刑法 2 忠肅王 12年 教.

역마(驛馬)로 운반하니 피해가 막대하였다. 관사로 하여금 엄하게 금지하여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敎曰 僧尼 誑誘愚民 鳩聚財物 輸以驛馬 害莫大焉 令官司 嚴加禁斷).

숙종 6년 6월, 백성과 중·여승이 만불회를 하는 것과 집을 시주하여 절을 만드는 것을 금하였다(禁男女僧尼群聚萬佛會及舍家爲寺).

충렬왕 원년 6월, 부모의 제삿날에 재를 올리는 일이 아니면 절에 가는 것을 금지하였다(非父母忌齋 禁往寺社).

충숙왕 후 8년 5월...성안의 부녀자는 신분의 존비(尊卑)나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부처님께 꽃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어 재를 베풀고 등불을 밝혀 무리지어 절로 가서 중과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자가 간혹 있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백성일 경우에는 그 죄를 자식에게까지 연좌시키고 양반집의 부녀자일 경우에는 그 죄를 남편에게까지 연좌시켜라(忠肅王 後八年五月 監察司榜示禁令...一 城中婦女 無尊卑老少 結爲香徒 說齋点燈 群往山寺 私於僧人者 間或有之 其齋民罪坐其子 兩班之家 罪坐其夫 ).

공민왕 8년 12월 사람들이 마음대로 중·여승이 되는 것을 금지하였다(禁人擅爲僧尼).

(공양왕 3년 7월에) 다시 부녀자가 절에 왕래하는 것을 금하였다(復禁婦女往來佛宇).

귀하던 천하던 부녀자는 부모의 상을 당했을지라고 절에 가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자는 절개를 잃은 것으로 논죄하시고 감히 부인의 머

리를 깎는 자는 죄를 가중하고 중이 되는 자도 절개를 잃은 것으로 논죄하시고 주현의 관리와 역의 관리 및 공·사 노비는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貴賤婦女 雖父母喪 無得詣寺 違者以失節 論 敢祝婦人髮者 加以重罪其爲尼者 亦論以失節 州縣吏驛吏及公私奴婢勿許爲僧尼 從之).

위의 사료들은 고려시대 만연했던 불교의식과 이를 통한 남녀의 풍기상에 문제가 사회문제를 야기해 국가에서 문란해진 풍속을 바로잡고 국가재정의 궁핍함을 바로 잡기 위해 발표한 것들이다. 이를 통해 고려 후기 불교가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당시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활동력과 시주를 통한 경제력을 추측할 수 있다. 즉 부녀자가 절에 가는 것을 금지시킨 것은 풍기가 문란해지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고, 절에 대한 시주를 금하고 출가를 금지한 것은 세금징수·요역동원 등을 위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규정은 거의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高麗史』에 전하는 왕실의 불사를 살펴볼 때 더욱 그러하다. 사족(士族)부녀, 평민의 경우 구체적 이름이 전하는 사료는 없으므로 왕실 여성들의 불사만을 통해 그 실상을 파악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4> 고려시대 왕실여성들의 佛事<sup>72)</sup>

※( )太后

왕	시주·불사 ·반승	기복·점등·재	보살계·청법 ·법회	사경·송경	계
선종	1(1)		1(1)		2
현종		1(1)			1
숙종	2(1)			1(1)	3
예종	5(1)	4(3)			9
의종		1(1)			1
원종		1			1
충렬왕		4	1		5
충선왕	2	3			5
충혜왕			1		1
충목왕			1		1
공민왕	1	3	1		5

72) 정세화·최숙경·이배용·장필화·김영미·박진숙, “전계서”, 1988.

이러한 불교의 생활화와 여성들의 두터운 신앙으로 자연 니·승의 수요가 상당하였으리라고 생각되고, 불교와 고려사회를 위해 현저한 공헌을 한 니승도 배출되었을 것 같은데 역사상에 눈에 띄이는 이가 별로 없다. 이것은 아마도 『高麗史』 편찬자들의 유교적인 편견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고려시대에 불교신앙이 접하였던 무계와 승려의 수료를 감안하면 응당 열전에 고승열전(高僧列傳) 쪽이 끼었어야 옳았을 것 같은데 그들은 전혀 문제삼지 않았으며, 고려 불교의 거봉인 대각국사 의천같은 이의 전설도 왕족 가운데 기어 알려지게 되었을 뿐이며, 고려 불교의 또 하나의 봉우리인 불일보조국사지눌(不日普照國師知訥)의 전기는 열전에서 빠지고 있다. 따라서 역사에 오를 만한 여승의 종교적인 사적이 있다 해도 고려사 편찬 때 오르지 못했을 것으로 여승의 사적이 눈에 띄지 않음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세가나 열전 중 알려진 니승들의 사적들은 불교의 신앙적인 경건과 거리가 먼, 오히려 퇴폐적이고 타락된 모습만이 전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를 들면 어떤 니가 자칭 미륵인(彌勒人)이라 일컬으며 호세무민(惑世誑民)하여 무지한 백성들이 다투어 미포를 바쳤던 바 나라에서 이를 알고 장류(杖流)시킨 이야기<sup>73)</sup>, 경제적으로 팽대하여 세속적인 이굴(利窟)로 화한 사원에서 니승이 양주를 하며 팔았다고 전한다.

다음으로 고려시대 여성들이 불교로 출가한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대조비(大朝妃) 대서원부인(大西院夫人) 소서원부인(小西院夫人)은 동주인(洞州人) 김행파(金行波)의 딸들로 일찍이 왕건이 서경에 가던 길에 가던 김행파가 왕건을 집에 모셔들여 두딸로 각기 하루밤씩 모시게 하였던 것인데 왕건이 두 여인을 다시 찾지 않자 둘은 모두 출가하여 니가 되었다. 이에 뒤에 왕건이 그들을 가엾게 여겨 서경에 대서원 소서원의 두절을 지어 주고 전민(田民)을 내렸다.

그밖에 왕비로서 니승이 된 경우로는 공민왕의 혜비 이씨(이제현녀), 신비렴씨(염계신녀), 정비안씨(안극인녀) 등으로 모두 공민왕이 살해되자 삭발하고 니

73) 『高麗史』 卷116 列傳 29 李琳傳.

가 되었다.

명종때 간통죄를 지은 동국의 노비를 니로 하였고<sup>74)</sup> 충선왕 때 청빈한 관리 김지숙(金之淑)은 집이 가난하여 두 딸을 시집 보내지 못하고 니승으로 출가시키고 있으며<sup>75)</sup>, 같은 충선왕 때 황주 목사 이견(李緝)의 처 심씨의 경우는 간부(奸夫)와 더불어 본부(本夫)인 이견을 죽인 것이 발각되어 헌부에서 극형에 처하려 하자 그 심씨의 일족 가운데 충선왕에게 득총(得寵)한 승려가 있어 여러 번 왕의 뜻이 내려짐을 막아 심씨가 죽임을 면하게 되자 나라 사람들이 모두 절치통분(切齒痛憤)하였다는 것이다. 그 때 조연수(趙延壽)가 심씨를 축발(祝髮)시켜 쟁업원(淨業院)에 안치시킴으로써 사람들이 모두 시원히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sup>76)</sup>

즉 고려시대 여승이 되는 경위는 이혼하여 재가하지 않은 경우<sup>77)</sup>, 가난하여 시집을 못간 여성의 앞날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죄의 대가로 강제로 니승이 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상의 니승들의 출가경위와 나라의 대민정책을 아울러 볼 적에 니승의 불교계에서의 지위가 삼국시대만큼 높지는 않았던 것 같으며 여성이 출가한다는 일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출세의 길과는 거리가 있었던 듯하다. 즉 행복한 환경에서 순수하게 법열에 넘쳐 이루어지기 보다는 임종에 비로서 자기의 명복을 위해서라던가, 불우한 여성이 그 불행에서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겠다.

불교신앙이 부너, 특히 귀족여성들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구체적 사실은 고려 양반 여성들의 묘지에서 엿볼 수가 있다. 그들이 불교신앙에 들게 됨은 나이 어려서 가정에서 습속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며 그것이 생활화되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불서를 읽으며, 낮에는 온종일 방적에 골

74) 『高麗史節要』卷13 明宗26年 3月條.

75) 『高麗史節要』卷23 忠宣王 2年 11月條.

76) 『高麗史』卷105 列傳 18 趙仁規附延壽傳.

77) 대서원 부인과 소서원 부인은 비록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왕건과 인연을 맺은 후 다시 찾지 않은 것은 기처당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몰하고 밤늦게 또 불경을 외운다던지 하여 늘상 불경을 외우는 일로 일과가 시종(始終)되었고, 때로는 금강경이니 화엄보전이니 하는 특정한 불경을 상적(常續)하는 이도 있다. 불교의 계율에 따라 일상생활을 보내어 술과 육식을 피하였고, 많은 아들 가운데 한 둘은 승려로 출가시키고 있다. 포시(布施)도 하고 또 단월로서 사원에 각종의 기진을 하고 있다.<sup>78)</sup>

불교를 독실히 믿어 항상 관세음보살을 외었다. (□崇信內教 常念觀世音菩薩□號；始興郡副因皮氏墓誌.)

이때 국가에서 흥국사□□보전을 보수하였는데 부인은 시주로 백은 10근을 바쳐 그 비용에 충당하게 하였다. (時國家修補興國寺□□寶典夫人施納白銀十斤 以充其費；始興郡副因皮氏墓誌.)

(※ □는 판독불가 문자)



남원군부인 심씨(南原郡夫人梁氏)의 경우처럼 어느 절에 별전을 지어 타불대장경(陀佛大藏經) 5000여권을 안치하고 아울러 납곡(納穀)하여 그 이자로 향화(香火)의 자(資)가 되도록 한다던지 김포군군 정씨(金浦郡君 鄭氏)의 경우 병이 들자 대서원을 세워 당시 나라에서 보수 중이던 흥국사보전(興國寺寶典)에 백은 10근으로 그 비용을 채우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예일 뿐, 무수한 여신도의 기진이 있었던 것은 오늘날까지 전하여지는 중, 반자(飯子), 금구(禁口), 향로 등에 여단월명(女檀越名)이 새겨진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당시 여성들의 생활화되었던 불교에의 귀심(歸心)은 불사 승려의 존중과 임종장송(臨終葬送)절차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 한 예로 나옹(懶翁)같은 명승에게 다투어 포시하려 하여 절 문이 메어지게 물려들었고, 법회에 구름같이 모여

78) 朝鮮金石總攬 韓國金石文追補 등에 실려 있는 고려여성 묘지 40건의 경우를 더듬어 볼 적에 26건에 독실한 불교신앙에의 귀의를 기록하고 있다.



들었다. 묘지에 나타난 몇 예를 더듬어 보면 임종에 임하여,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서방불을 염하며 돌아갔다(沐浴改衣裳 口念西方佛而逝 ; 李一娘墓誌).

나이 83세로 나이 들어 병을 얻고 돌아가기 하루 앞서 머리깎고 여승이 되어 名은 향진이라고 하였다(年至八十三 以老疾將終 前一日剃度爲尼 名向眞 ; 樂浪郡大夫人崔氏墓誌銘).

7월 2일 병이 위독하여 살기 어려움을 알고 묘연사주 법양가도승통 목차를 청하여 머리깎고 여승이 되어 법명을 성공이라 하였다. 법복을 갖추어 수계하고 이에 노비 일구를 사하여 출가하게 하고 11일 오시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자녀를 불러 뒷일을 부탁한 뒤 합장하고 아미타불을 오로지 염하다가 돌아갔다. 숨을 거둘 때까지 염불하여 입술이 움직여 마지않았으며 기진한 뒤에야 두손이 떨어졌다(七月初二日 疾篤遂知大期之難免 請妙蓮社主法 兩街都僧統 木且 剃草爲尼 法名省空 具法服受戒 仍捨一奴出家 至十一日 洗浴更衣呼子女 等付囑後事 合掌專念阿彌陀佛 當夕儻然而化 氣息將絕 念佛之脣動而不止 氣盡然後兩手乃頽 ; 務安郡夫人 朴氏 墓誌銘).

이상과 같이 고려시대 여성들의 삶은 불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임종을 절에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임종하더라도 사후 빈소를 절로 옮겼다.

불교와 관련하여 고려시대의 제례는 가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원에서 재를 올려 실시하였다.<sup>79)</sup> 여기에는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은 자격으로 참여했으며, 재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은 기일보(忌日寶)로서 자녀들이 모여서 공동의 기

79)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사원의 출입을 금하기도 했다.

금을 마련하였다. 즉 사원에서 제례를 주관하고 자식은 남녀 차별 없이 참여하여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아들을 얻어야만 봉사(奉祀)할 수 있었다는 조선시대 가례 중심의 제례와는 달랐고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여성도 봉사가 가능했다. 또한 제례시 자녀의 균등한 부담은 여성에게도 상속의 원리가 전제되었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따라서 불교와 밀접히 관련된 고려사회에서 여성들은 종교행사를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전하여 일정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안방에 앉아서 자녀교육만 하는 소극적인 생활이 아니라 불교행사를 통해 여성들이 모여 의논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면은 남성만이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가 아니었다는 일면을 보여주는 듯 하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유교논리로 사회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남녀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남성을 위주로 교육하는 교육풍조가 만연하게 만들었다.<sup>80)</sup> 즉 유교의 종법<sup>81)</sup>질서가 강조되면서 부녀자들이 절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시켰고 이는 여성의 활동범위를 가정 내로 축소시키고 더 나아가 여성의 여론 형성 과정을 통제해 버리는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또한 유교의 영향은 사회구조의 원리면에서도 불교의 윤회설이나 환생설과는 달리 부계의 수직적 동질성을 강화시켰다. 이는 곧 여성의 제사상속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여성의 지위를 악화시키는 점을 예고하는 것으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악으로 그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악습으로 발전할 정도였다.<sup>82)</sup> 그리고 고려 후기에 들어오면서 원과의 밀접한 정치관계와 성리학을 인정한 이후 고려국광과 원과 외교관계로 자주 접촉하던 관인들에게 성

80) 權斗奎, “전계서”, 1995. pp.94-95

81) 李兌榮, “전계서”, 1972. p.115 ; 종법의 특징은 첫째 혈족에 의하여 친족을 계산하는데 부계만을 계산하고 둘째, 부의 신분과 권리가 아들에 전하며 셋째, 일족의 권력이 부에게 있으며 자녀는 부의 지배를 받고 넷째, 족외혼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장자상속제를 택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종법제도는 중국에서 전래한 것으로 고려 중엽에 유교가 유입되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억불숭유정책으로 주자학을 국학으로 정함에 따라 예로서 받아 들여졌고 법제화까지 되어 윤리화·습속화됨에 이르렀다.

82) 許興植, 「전계서」, 1986, p.40.

리학과 함께 중국의 친족윤리가 침투되었다. 뒤이어 주자가례를 통해서 사회구조의 변혁, 가족·친족 등 사회기반의 변질을 가져오게 되었다.

## V. 요약

이상으로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았다. 고려시대 혼인은 남녀의 자유로운 교제가 가능했던 사회로 자유혼과 근친혼이 성행하였다. 특히 근친혼은 서와 처가 외가와 외손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친자와 같은 존재로서 처가의 제반사에 동참하고 여성의 가족 계승 및 외손봉사를 가능케 하였다.

칠거지악 및 무신난 이후의 출세와 부귀를 위해 그리고 아무 이유없이 빈번하게 기처당한 고려여성들의 생활을 그 일면만 바라보았을 시는 매우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은 여성에게 치명적인 결점도 되지 않았고 기처당했어도 재가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가 후에 남편의 신분이 전 남편의 신분보다 더 높아 신분상승의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고려여성의 재가는 왕실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조선 초기까지 계속되었다. 재가금지에 대한 국가적 노력은 강력한 제재가 아닌 수절권장 형태로 나타났고 수절 역시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차원의 권장 차원이었다. 재가금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성리학자들의 엄격한 유교윤리 및 통치원리를 펼침으로써 그 효력을 나타냈다.

고려시대 여성들은 혼인의 여부를 막론하고 재산상속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여성이라고 해서 분급량이 감소되는 법이 없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토지 및 노비를 사원에 시주함으로써 단독으로 재산을 처분 할 수도 있었다. 또한 혼인

하여 부부간의 재산문제에 있어서도 부부개인의 재산을 소유하였고 남편으로써 부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부인의 양해를 얻어야만 가능했다. 남편사후 재산상속에 있어 부인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그 재산을 갖고 재가할 수 있을 만큼 여성의 지위가 보장되었다.

호적제도상에서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면 먼저 호적기재 양식에서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아닌 남녀 구분 없이 연장자 우선의 규칙에 의해 기재가 이루어졌다. 또한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음으로 인해 한 가정의 통제권과 재산권 제사권을 소유하였고 이는 자연 한 가정의 대표로 대외적인 대표성을 떨 수 있었다. 또한 부모 봉양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여성에게도 주어져 가족 내에서 여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끝으로 불교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사회구조를 수평적 원리를 가능케 하여 여성들의 지위를 보장하였다. 수많은 불교행사를 통해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가능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론형성의 장까지 마련하였으며 남녀의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여 자유스러운 교제를 가능케 했다. 고려말에 이르러 세속화된 불교와 문란해진 풍속을 바로잡고 세금의 확보를 위해 여성들의 사원출입과 시주를 금지하였지만 여성들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불심에 대한 열망은 여성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쳐 일상생활에서 불경을 읽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임종을 맞이함에도 불교로의 귀의를 간절히 바랐다.

제례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였고 이러한 것은 결국 상속에 있어서도 여성이 참여하였음을 가능케 하였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고려시대에는 여성존중의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성이 개별적이 존재로 우위적인 지위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고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특징이 이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여성의 지위는 고려시대 당대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고려 이전의 풍속들의 영향과 엄격한 유교질서 아래의 조선시대 이전의 여러 상황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고려여성에 대한 지위를 더 깊이 고찰함으로써 고려시대 생활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이분법적인 사고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고 더 많은 사료를 찾아내고 이 사료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직 연구가 미약한 일반서민에 대한 생활을 고찰하고 당시 사회와 여성들의 생활을 비교함으로써 생활사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사료

經國大典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文選

東史綱目

稼亭集

成宗實錄

世宗實錄

治隱集

英祖實錄

太祖實錄

韓國金石文追補



### ▣ 단행본

姜咎哲, 「高麗土地制度史研究」, 高大出版部, 1980.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출판부, 1969.

朴龍雲, 「高麗時代史」, 一志社, 1988.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研究-婿留婦家婚을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8.

裴慶淑, 「韓國女性私法史」, 인하대출판부, 1988

邊太燮, 「<高麗史>의 研究」, 삼영사, 1982.

----, 「고려사의 제문제」, 삼영사, 1985.

신인철, 「韓國의 사회구조」, 문덕사, 1992.

- 歷史學會編, 「韓國親族制度研究」, 一潮閣, 1992.
- 李光奎, 「韓國 家族의 史的 研究」, 一志社, 1977.
- 鄭容淑, 「高麗王室族內婚研究」, 새문사, 1988.
- , 「高麗時代의 后妃」, 閔音社, 1992.
-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1983.
- , 「韓國古代社會史研究」, 一志社, 1986.
- 崔弘基, 「韓國戶籍制度史研究」, 서울대출판부, 1975.
- 한국중세사학회편, 「고려시대사강의」, 도처출판 늘함께, 1997.
- 許興植, 「高麗社會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81.
- , 「韓國金石文全文」, 亞細亞文化社, 1984.
- , 「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 ▣ 논문

- 강진옥, “열녀전승의 역사적 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여성학논집」 제12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95.
- 高光林, “李朝時代에 있어서의 婚姻制度에 關한 研究”, 「인천교대논총」 2, 1971.
- 高貞子, “韓國女性의 地位變遷過程에 關한 研究”, 「대학원논문집」 제Ⅷ집, 인문·사회과학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84.
- 權斗奎, “高麗時代의 別籍異財禁止法과 家族規模”, 「慶北史學」 13, 1990.
- , “고려시대 호주의 기능과 지위”, 「대구사학」 43, 1992.
- , “高麗時代의 家族形態와 戶의 構造”, 慶北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5.
- 권순형, “고려시대 간비(奸非)연구”, 「여성학논집」 제11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94.
- , “고려시대 혼인제도에 대한 일 연구-이혼을 중심으로”, 「梨大史苑」 第28輯, 梨大史學會, 1995.
- , “고려시대 孀留婦家婚에 대한 연구”, 「梨大史苑」 第33輯, 梨大史學會,

1997.

旗田巍, “土地の嫡長子相續と奴婢の女子均分相續”, 「東洋文化」22, 1957.

金炯佑, “高麗前期 國家的 佛教行事의 展開樣相”, 「伽山李智冠스님 華甲紀念 論業 韓國佛教思想史」上, 1992.

김동옥, “이조 기녀사 서설”, 「亞細亞女性研究」5, 1966.

김명자, “가신신앙의 성격과 여성상”, 「여성문제연구」제13집, 대구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 연구소편, 1984.

金尙泰, “우리나라 婚姻制度에 나타난 女性地位의 變遷史的 考察”, 「馬山看護 保健專門大學 論文集」第十輯, 馬山看護保健專門大學, 1986.

金相鉉, “高麗後期の 歷史認識”, 「韓國史學史의 研究」, 韓國史研究會.

金聲均, “韓國醫女制度創設略考”, 「白山學報」3, 白山學會, 1967.

金成竣, “麗末元公主出身 王妃의 政治的 位置에 대하여”, 「韓國中世正置法制 史研究」, 일지사, 1985.

金水珍, “高麗蔭絃에서의 外孫出現과 法制變改”, 「考古歷史學志」制7輯, 東亞 大博物館, 1991.

-----, “高麗時代의 母權에 대한 考察”, 「考古歷史學志」9, 東亞大博物館. 1992.

-----, “高麗時代女性官人”, 「釜山女大史學」10·11, 부산여대사학회, 1993.

-----, “高麗時代 女性의 土地所有形態”, 「釜山女大史學」12, 부산여대사학회, 1994.

金龍善, “高麗時代의 家系記錄과 ‘族譜’”, 「韓國史學論業(上)-고대편·고려시대 편」, 일조각, 1994

金容淑, “宮中女性生活研究”, 「亞細亞女性研究」4,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 연구소, 1965.

-----, “韓國女俗史”, 「韓國文化史大系」,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70

金銀坡, “相續形態를 中心으로 본 高麗時代의 女子의 地位”, 「全北史學」2, 全 北大學校史學會1978.



- , “高麗時代 法制上 및 社會 通念上에서의 女子의 地位”, 「全北史學」3, 全北大學校史學會, 1979.
- 金一美, “朝鮮前期의 男女均分相續制에 대하여”, 「梨大史苑」8, 梨化女子大學校, 1969.
- 김정자, “서양 중세 여성의 지위와 역할”, 「성대사림」제5집, 성대사학과, 1989.
- 金哲垓, “高麗中期の 文化意識과 史學의 性格”, 「韓國史研究」9, 1973.
- 盧明鎬, “高麗時代 鄉村社會의 親族係綱과 家族”, 「韓國史論」19, 국사편찬위, 1988.
- , “高麗社會의 兩側의 親族組織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 , “田柴科體制下 的 農民層의 土地所有-토지상속제와 관련된 검토를 중심으로-”, 「韓國史論」23, 서울대, 1990.
- 리영자, “불교의 여성관의 새로운 인식”, 「한국여성학」, 1985
- 박천식, “고려 우왕대의 정치권력의 성격과 그 추이”, 「전북사학」4, 전북대학교 사학회, 1980.
- 裴慶淑, “韓國離婚法の 變遷에 관한 研究”, 「法政大學報」第1輯, 仁荷大學校 法政大學 學徒護國團, 1982.
- 서병한·이상옥, “한국법제사상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천”, 「여성문제연구」12집, 효성여대여성문제연구소, 1983.
- 徐閏吉, “佛敎의 護國法會와 그 道場”, 「佛敎學報」14,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77.
- 성병희, “제례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여성문제연구」제12집, 대구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 연구소편, 1983.
- 孫鉉暉, “韓國의 傳統的 婚姻의 形態와 成立要件에 관한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8.
- 신영숙, “한국 가부장제의 사적 고찰-고려시대와 조선 전·후기를 중심으로-”, 「여성·가족·사회」창간호,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1991.

- 申虎澈, “高麗時代의 土地相續에 대한 再檢討”, 「歷史學報」第98輯, 歷史學會, 1983.
- 尹庚子, “高麗王室의 婚姻形態”, 「淑大史論」3, 숙명여자대학교 사학회, 1968.
- 尹載秀, “高麗王朝의 婚姻攷”, 「石堂論業」第11輯, 東亞大學校 石堂傳統文化研究所, 1986.
- 李京炯, “高麗時代의 系譜觀念과 親族”, 최재석 교수 정년기념 「韓國의 社會와 歷史」, 1991.
- 이상백, “제가금지 습속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사연구론」, 한국문화총서2집, 1954.
- 이재경, “국가와 성통제”, 「한국여성학」 제9집, 1993.
- 李兌榮, “韓國女性의 法的地位”, 「한국여성사」Ⅱ, 이대출판부, 1972.
- 李炫熙, “麗末鮮初의 女性生活에 關하여: 妾問題를 中心으로”, 「亞細亞研究」, 1971.
- 李效在, “韓國結婚制度를 통하여 본 變動의 類型”, 「震檀學報」31, 震檀學會, 1967.
- 張炳仁, “朝鮮初期의 離婚의 類型과 그 規制”, 「朝鮮初期 離婚制度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 鄭範錫, “우리나라 同姓婚 및 近親婚에 關한 研究”, 「金斗憲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64.
- 정세화·최숙경·이배용·장필화·김영미·박진숙, “한국여성사정립을 위한 인물유형연구-고대에서 대한제국시대까지-”, 「여성학논집」, 제5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88.
- 정용숙, “고려초기 혼인정책의 추이와 왕실족내혼의 성립”, 「한국학보」37, 일지사, 1984.
- , “公主의 婚姻關係를 통해 본 高麗王室婚의 一斷面”, 「高麗史의 諸問題」, 삼영사, 1985.
- , “《삼국사기》에 나타난 여성상”, 「부대사학」18집, 부산대학교 사학

회, 1994.

鄭鉉柏, “새로 쓰는 여성의 역사-원시/고대편:모권제 논의를 중심으로”, 「여성」 2, 1988.

-----, “새로운 女性史, 새로운 歷史學”, 「歷史學報」第150輯, 歷史學會, 1996.

崔淑卿, “高麗時代의 女性”, 「韓國女性史」 I, 梨大出版部, 1972.

-----, “高麗社會의 女性”, 「韓國女性史」 I, 梨大出版部, 1972.

-----, “여성의 일상생활과 문화”, 「韓國女性史」 I 梨大出版部, 1972.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 「韓國文化史大系」 IV,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0.

-----, “高麗 後期 家族의 類型과 構成-國寶 131호 고려 후기 호적문서에 의한 접근-”, 「韓國學報」 3, 一志社, 1976.

-----, “高麗朝에 있어서의 土地의 子女均分相續”, 「韓國史研究」 35, 1981.

-----, “高麗朝의 相續制와 親族組織”, 「東方學志」 31, 연세대학교 동방학 연구, 1982.

-----, “高麗時代의 父母田의 子女均分相續再論”, 「韓國史研究」 44, 1984.

-----, “韓國家族史에서의 서로 다른 두 原理에 대하여”, 「歷史學報」 第106輯, 歷史學會, 1985.

-----, “韓國社會史研究와 社會脈絡의 視覺”, 「精神文化研究」 통권25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河炫綱, “정치적 변동과 여성”, 「한국여성사」 I, 이화여대출판부, 1972.

-----, “여성의 생활과 지위”, 「한국여성사」 I, 이화여대출판부, 1972.

-----, “高麗前期의 王室婚姻에 대하여”, 「韓國中世史研究」, 일조각, 1988.

한영우, “왕권의 확립과 제도의 완성”, 「한국사」 9, 탐구당, 1981.

許興植, “高麗時代의 夫妻形態와 그 變遷”, 「韓國親族制度研究」, 一潮閣, 1992.

洪成基, “高麗時代 土地相續의 여러 形態”, 「韓國親族制度研究」, 一潮閣, 1992.

洪成杓, “女性の 財產權行使의 限界와 그 性格”, 「歷史學報」 第122輯, 歷史學

會, 1989.

-----, “婚姻을 통해서 본 中世英國 女性の 지위”, 『歷史學報』第156輯, 歷史學會, 199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The social status of koryŏ Women in 「Koryŏ history」  
- mainly concerning women's wedding relationship**

Kang, min-soon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in, young-il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social status of koryŏ women. I'm sorry that the existing study of women fail to get out of the political history on the topics, so that this study is chiefly focused on the women's life and based on selected koryŏ period

For this, I analyzed lots of historical data about women. To begin with, I examined the wedding cases of the koryŏ women in order to see that how was their social position, especially concerning their succession to a property when they got married or not. I also observed what role women played and what status they occupied through the family register. On the last chapter, I showed what the Buddhism had effects on the social structure of koryŏ in those days, In addition, I displayed what the sacrificial rituals of the Buddhism and religious life of women influenced on women's inheritance.

The following is to summerize these conclusions.

First, it is allowed to make free friends with man and women in koryŏ, when there were a lot of free marriage and intermarriage. As a result. it

was possible for women to succeed to their family and to perform a sacrificial rite(a kind of ceremony that smooths their the deceased relative's souls and prays the other world)

Second, there were frequent case that women were divorced without any special reason, though, these were not a weakness for them to remarry.

In those days, there were many cases for women to get married again with not only their own property but also that of the former husband. Furthermore, they could raise their own social level since they had remarried because their husband was of higher social status than ex-husband. The government authorities took moral steps toward these social phenomenon and encouraged especially that women should remain faithful to their deceased husband and gave them the titles of nobility.

Third, koryŏ women could inherit their parents estate and also had a right to dispose of their property freely regardless of their marring or not.

Fourth, women also were able to be the master of a house a family register. Though this, we can see that it is formed without sex discrimination and worked the principle, the oldest the first.

Finally, the Buddhism of koryŏ enabled the social structure of koryŏ to be level with and ensured women's social status. This religion also played a positive role that women could have a free conversation and argument through a religious life. In the late koryŏ, nevertheless, there were many evils such as the Buddhism's secular and the disorder of customs, so that koryŏ society was getting corrupted in social and economical aspects.

In the Chosun Dynasty, at last, the women's life became more and more isolated owing to strict patriarchy and the etizette of a family.

In the conclusion, there was full of social atmosphere to respect women in koryŏ period.